

The number of children workers is increasing as owners of restaurants, fast food shops, food delivery shops, patrol stations are making use of the low wage of children to make profits. But the children's rights which should be observed by law are ignored. A report on 'Juvenile working situations and how to support them' issued by Seoul YMCA, in October, 2000 clearly demonstrates that 22.6 per cent of them were not paid at all, 20.5 per cent were not paid over time work, 10.5 per cent experienced physical ill treatment or sexual harassment, and 12.2 per cent said they were discriminated against. According to the report, the juvenile's rights concerning work are extremely abused.

Government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is not at a level to protect children from economic exploitation. This government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on juvenile work is done annually in July, however, it focuses only on large working places, and totally excludes small 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Even worse, governmental measures to control economic exploitation are not widely known to children, who then do not report their cases to authorities. For instance, not a single case of economic exploitation of children was brought to the Relief Committee of Unemployed, Seoul in 2000, according to a report issued by the committee. Therefore, education of juvenile workers on measures aimed at curbing exploitation is urgently required.

<Recommendation>

- λ Establish solid and specified measures to eliminate economic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make the measures widely known to the public and children.
- λ Only appropriate work should be offered to children who need to work.

29.2. Sexual Harassment and Physical Ill Treatment

There are no statistics on child prostitution or even prostitution in general, though, it is estimated that up to a third of those in the sex trade in Korea are juveniles. In fact, out of 17 people who answered a survey conducted by Saeumtuh, a human rights organization, 12 were aged 13 to 18. The organization conducted the survey on victims of sex trade in Kyungki-do area in February, 2002.

The issue of so-called 'Enjokosai' (A sexual relation between male adult and young school girls under 19. The adult pay the girls for the relation) has become a severe social problem, and whether the names of male adults associated in 'Enjokosai' are to be publicized or not created a social controversy. However,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mes for juvenile victims of the sex trade are at all not fully established. 'The law of Juvenile Protection from Sex Trade' was enacted in July, 2000. According to the law, anybody who buys sex from a juvenile can be sentenced to a maximum of three years in prison or fined 20 million won (about 16,000 \$).

The idea is that the trade in sex cannot be decreased without punishing

those who buy another's body. However, the problem is that only 6 per cent of those accused of buying have been found guilty in judicial courts but they received slight punishment, according to the Annual Judicial Statistics in 2001. Another problem to be noted is that juveniles who have escaped the sex trade are likely to become involved again because the punishment is not strict enough on the one hand and the trade is run secretly on the other.

<Recommendation>

- λ Establish efficient rehabilitation programmes for the juvenile victims.
- λ Increase the number of professional personnel involve in juvenile affairs.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 2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보충의견
2003.1.13

1. 이 보고서는 2003년 1월 15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제2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의 보충의견이다. 특히 소년사법에 대한 추가정보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아동권리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소년사법(Juvenile justice)

2. 한국의 소년범죄의 특징은 양적인 증가, 재범률의 증가와 저연령화이다. 이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의 비행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 방식이 비효과적임을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 현행 소년사법처리절차

소년사건은 그 유형에 따라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로 처벌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원이 형사처벌은 형사법원이 결정한다.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고 그 절차는 일반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사건의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처리된다. 소년사건을 보호절차 혹은 형사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이를 검사선의주의라 한다.

4. 경찰 및 검사에 의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소년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대개 경찰에 의해 개시된다. 경찰은 1) 범죄소년을 검거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2)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법원에 송치하거나 3) 불량행위소년을 단속하여 소년풍기사범으로 경찰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4) 요보호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보호조치를 받도록 한다.

이에 대해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사는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대하여 충실하게 조사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사는 범죄사실의 경중을 중시하여 선도보다 처벌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인권은 수사과정과 조사과정에서 쉽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보장이 중요하다.

한국에서 구속의 남용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줄곧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소년범죄자의 구속기소율이 성인범죄자의 구속기소율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범죄분석, 2002년)에 따르면 소년범의 기소율은 32.8%로 전체 56.3%보다 낮으나, 구속기소율은 5.5%로 전체 4.0%보다 오히려 높다. 이는 소년범이나 비행소년의 발생이 가정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거나 정확한 거취가 없는 경우 구속 수사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소년미결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 보호시설과 법적 조력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구속중인 소년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 및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절실하다.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 내지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흔히 있는 수사관행이다. 한 예로 최근(2002.10) 한국에서는 검사 조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백을 위주로 해온 수사관행에 비판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대한 비난이 고조됐다.

특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의 유도나 암시 또는 강요에 인하여 아동이 허위 자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아동의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로 삼지 않고, 자백이 아동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형사처분 혹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 소년형사절차의 문제점

형사법원은 소년형사사건에 대해 성인형사사건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소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성인범에서보다 소년범에서 더 많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변호사의 지각입장, 불출석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일부 국선변호인은 스스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이 부진한 이유로는 낮은 보수, 변호사의 부족, 법원의 과중한 부담,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있다.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의 개입이 강화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소년보호절차의 문제점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비행사실의 인정'과 '보호처분의 결정'으로 나뉜다.

첫째, '비행사실의 인정'과정은 1) 사건의 소년부 송치, 2) 판사의 기록 검토와 심리개시여부 결정, 3) 소년법원판사의 직권에 따라 본인, 보호자 및 보조인 등을 소환하여 비공개 심리, 4) 소년법원판사가 소년에 대해 비행사실을 알리고 소년의 진술 청취, 필요할 경우에는 보충적 증거조사 5) 최종적으로 사실인정을 하게 된다.

둘째, 보호처분의 결정은 불처분결정과 보호처분으로 나뉜다. 보호처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처분은 '보호관찰처분'과 '소년원송치'이다.

그러나 소년원송치는 일종의 시설내처우로서 소년교도소에 보내는 일반 형사처벌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 또한 보호관찰처분 역시 공식적인 사법처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낙인효과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절차에도 증거법칙, 국선변호인제도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절차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보조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년에 대해 보조인이 선임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소년보호절차에도 국선변호인제도에 상응하는 국선보조인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보조인은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육자 등의 전문가들이 활동하도록 하여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년을 대리할 수 있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형사보상제도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사건에 대해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을 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이는 무죄인 소년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특히 소년보호절차에 회부되어

소년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행사실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이송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소년법원이 독자적으로 무죄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형사보상의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8. 우범소년의 문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는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③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서,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性癖)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자 ㉢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 등이다. 이상의 ①과 ②에 해당하는 자를 범죄소년·촉법(觸法)소년 ③에 해당하는 자를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범사유가 '정당한', '부도덕한', '덕성'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범소년은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범사유 자체가 아동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범소년을 소년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on Juvenile Justice in Korea

Submitted by Korean NGOs' Coalition on the CRC

13 January 2003

1. This report contains the information on juvenile justice, which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ked Korean NGOs to provide. We expect the Committee and Korea government to have a constructive dialogue and to reach productive conclusion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Republic of Korea.

2. The feature of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is its increasing in number and the rate of second offense, the age total to low. It has been indicated, in the meanwhile, that the various treatment of the Criminal Justice Department to young offenders isn't effective.

3. The Existing Legal Procedure of Juvenile Justice

The juvenile delinquency can be treated with the protective guidance or criminal punishment according to degree of difficulty in reform. The protective guidance is decided by Juvenile Court, and the criminal punishment is decided by the Criminal Court. The protective guidance belongs to the Court of Family Affairs's Juvenile Court or the District Court's Juvenile Court. Its procedure isn't applied by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n the common criminal law of legal procedure.

The criminal case which is caused by juvenile, is almost same treated as the legal procedure of common criminal case. The public prosecutor has an authority to decide first of all, whether the juvenile delinquency will apply protective procedure or criminal procedure. This is principle which is called 'the rights to prior consideration of public prosecutor'.

4.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s legal procedure by the police and the public prosecutor

The procedure of juvenile justice, generally, is started by the police.

The police,

- * arrest a criminal juvenile and then send a public prosecutor. or
- * search a juvenile violation of the law and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a crime and then transmit the Juvenile Court. or
- * control the juvenile delinquent as an offense against public moral and treat him/her with the police's internal policy. or

* search a child who needs a protection, and then place him/her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welfare law.

The public prosecutor, about this, decide whether he will prosecute or not as a direct investigator or a commander. But the critics are giving rise to investigation by the police or public prosecutor- insincerity of investigation about personality and extenuating environment of the criminal juvenile. Especially, since the public prosecutor who has attached importance to the criminal act's relative seriousness, has a tendency to precede with punishment rather than guidance, so the rights of the child can be violated easily in through that procedure of investigation. Therefore, the guarantee of principle of due process is important in the investiga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e abuse of arrest constantly in Korea which is the typical example as unfair exercise of public power. The arrest rate of prosecution to young offenders, most of all, is higher than the arrest rate of prosecution to adult offenders. According to data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Analysis of Crime, 2002), the rate of prosecution of juvenile delinquency occupies 32.8 percent and the result is lower than 56.3 percent of a total but the arrest rate of prosecution occupies 5.5 percent that it is higher rather than 4.0 percent of total. In the result that follows, the young offender or juvenile delinquency is a general occurrence when he/she hasn't a family or parents, guardian, and also they don't play a role in the situations. There is much potentiality of arrest, therefore, in such a case, when the juvenile delinquency hasn't a home come back or house to live surely.

In order to minimize the unconvicted detention, the matter must be settled without delay which is arranged with the improvement of system for juvenile who hasn't parents or guardian that doesn't play a role normally. Moreover, the guarantee of rights is required to assist with the urgent needs of the lawyer and assistant for the juvenile suspect.

The extortion of confession or statement to a suspect from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that is considered to be normal, polite, and acceptable in procedure of investigation, and it has been done for a very long time commonly. As an example, the suspect thirties is died recently who is investigated by the public prosecutor. The criticism has rose against, on this account, the custom of investigation on which has been depended upon the confession.

Specially, it is likely that the juvenile delinquent will sate on a false confession by the investigator's detection, inducement, suggestive air or enforcement. So the confession without child's will isn't adopted with evidence, and it must not go the criminal punishment or protective guidance when the confession is only evidence which is

disadvantage for the child.

5. The Problem of Juvenile Criminal Procedure

The juvenile criminal case is handled by the Criminal Court, along with the same procedure of adult criminal case. But only, the system for assigning counsel by the State must adopt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when the offender hasn't a lawyer or counselor. Practically speaking, the juvenile offenders more adopt the system for assigning counsel by the State than adult offender.

But the system for assigning counsel by the State has many problems. There is lateness for admission, default etc, as generally example, and some the system for assigning counsel by the State doesn't present a statement of the grounds of the final civil appeal, because it is judged for himself/herself that there aren't reasons. The reason of the public defender's poor activity is low fee, shortage of lawyers, overweight responsibility of the judg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a defense counsel assigned by the Court System, etc. For the purpose of greatest protecting to the rights of child, on this point, the plan is necessary that the intervention of lawyer should strengthen in procedure of justice.

6. The Problem of a Juvenile Protective Procedure

The trial of juvenile protective case is divided into 'a confession of misdeed' and 'a decision of protective guidance'.

First, the procedure of the confession of misdeed is attained by next proceeding.

- 1) The transmit of the case to the Juvenile Department
- 2) The record examination of the Judge and The decision of trial's administration on right or wrong, and then 3) The person him/herself, guardian, assistant, etc, is summoned by a Judge of Juvenile Court, then The starting of a closed trial 4) The Judge of Juvenile Court announce the misdeed to young offenders, so listen to the his/her statement and check of complementary evidence in case of need 5) In the end, the fact recognized by a Judge.

Second, the decision of protective guidance is divided into the decision of a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and the protective guidance. The most 'supervised probation' and 'be sent a Juvenile Reformatory' occupies the protective guidance. But there isn't the difference between 'be sent a Juvenile Reformatory' and common 'criminal punishment'. That is to say, 'be sent a Juvenile Reformatory' is common treatment of the Office. Because the supervised probation is public judgement, too, the problem has pointed out brand effect of society. So the insistence has rose that it should apply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the criminal of the law of legal procedure to the

juvenile protective procedure like the principle of evidence, the principle of the system for assigning counsel by the state, etc. The lawyer of criminal procedure is the legal assistant when it is juvenile protective procedure. In fact, but it is an very unusual case that juvenile delinquents has a legal assistant. The assistant should be allowed to "act" with the specialist group of a socialist, psychologist, pedagogist, and also there have to be to help and substitute essentially in the legal procedure of juvenile justice.

7. The System of Criminal Compensation

The Court may not rule a 'not guilty', even if the protective case, is sent to a Juvenile Department, has a decision of non-administration of trial or a decision of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It is disadvantaged for the innocent child. The mental hurt is so serious, in case that the trial is under Juvenile Court for the juvenile protective procedure. Consequently, in case of clear that the juvenile delinquents hasn't violated a law, and then send the Court, demands that the program should be prepared which is found not guilty for the system of the criminal compensation

8. The Problem of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a Crime

The Juvenile of protective case is ① a juvenile of guilty ② a juvenile who has done contrary to the law, over 12 under 14 ③ as a juvenile who has a risk to violate the laws someday, over 12, judging from his personality or environment (a) a man of propensity who isn't obey just management of the guardian (b) a runaway boy from home without righteous reason (c) a man of habitual criminal or a man who will often disturb moral character of oneself or another person.

The people are calling the child of ① and ②, as mentioned above, 'a juvenile delinquency' or a 'juvenile violation of the law', and the child of ③, calling,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a crime'.

But on this point, because the criminal reason consist of ambiguous idea like a 'righteous', 'immoral', 'moral character', the juvenile delinquency may receive a punishment, despite the fact that he had not got into offense. Now, it is advisable to except the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a Crime from the scope of juvenile criminal case as the criminal reason may restrict the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of Child.

- end -

20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2nd Session
Pre-sessional Working Group
7-11 October 2002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List of issues to be taken up in connect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Republic of Korea (CRC/C/70/Add.14)

Part I

Under this section the State party is requested to submit in written form additional and updated information, if possible, before 29 November 2002:

A. Data and statistics

1. Please provide disaggregated data (by gender, age, minority group, urban or rural areas) covering the period between 1999 and 2001 on:
 - a)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18 living in the State party;
 - b)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foreign children, including those from undocumented migrants.
2. In light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please provide additional disaggregated data (by region) for 1999-2002, budget allocations and trends (in percentages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budgets) alloc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evaluating also the priorities for budgetary expenditures given to the following:
 - a) Education, including pre-school, primary, secondary and special;
 - b) Health care, including primary, adolescent and other child related health services;
 - c) Social welfare and support programmes for families;
 - d) Protection of children who are in need of alternative care including the support of care institutions;
 - e) Juvenile justice.
3. Please provide disaggregated data (by gender, age, urban or rural areas) covering the period 1999-2001 on the:
 - a) Total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b)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rolled in private and public schools;
 - c)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school age that do not attend school;
 - d) Budget allocation in favou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4. With reference to child abuse, including sexual abuse, please provide disaggregated data for the period 1999-2001 (by age, gender and types of violations reported), on the:
 - a) number of cases of child abuse reported to police or social or other services;
 - b) number and proportion of victims that have received counselling and assistance in recovery.
5. Please provide disaggregated data on adolescent health, including on the incidence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TDs), HIV/AIDS, early pregnancy, abortion, drug and alcohol abuse (including within the family), suicide, accidents and mental health concerns.



6. Please provide statistical data (including, where relevant, by gender, age, type of crime) covering the period between 1999 to 2001 on the:
 - a) number of minors who allegedly committed a crime reported to the police;
 - b) number of minors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s who were sentenced by Courts to sanctions, and the nature of sanctions (community service; detention; other types of sanctions);
 - c) number of juveniles detained and imprisoned, the location of their detention or imprisonment (e.g. police station, jail or other);
 - d) number of suspended sentences
 - e) number of minors subject to protection procedures, and the nature of protective measures imposed;
 - f) percentage of recidivism cases.
7. With reference to special protection measures please provide, and evaluate, statistical data (including by gender, age, region and municipality, per year) between 1999 and 2001 on the number of children:
 - a) Involved in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trafficking, and the number of children provided with access to rehabilitation and other assistance;
 - b) Involved in child labour (formal and informal sector).

B.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1.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reasons some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Committee's previous observations (CRC/C/15/Add.51, 1996)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in particular those related to adoption (para. 15), and the aims of education (para. 16). Please explain how the State party envisages overcoming this situation..
2. Please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s considering withdrawing its reservations to art. 9(3), 21(a), and 40(2)(b)(v).
3. Please provide details regarding the mandate, functions and budge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whether it has a specific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child rights.
4. Pleas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system for data collection and whether it covers in a disaggregated way all children under 18 and all areas under the Convention.
5. In light of article 4, please explain how the State party has allocated resources in the wake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subsequent restructuring in order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Please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social services for children were taken into account when negotiating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6. Pleas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how governmental institutions cooperate with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for children.
7. Pleas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householder system of registration, including how foreign children and children born out-of-wedlock are registered at birth.
8. Pleas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practice of corporal punishment within the family, in schools and in other institutions. Please explain when Ministry of Education guidelines and school regulations permit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Part II

Please provide copies of the 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ll official languages of the State party as well as in other languages or dialects, when available. If possible, please submit these texts in electronic form.

Part III

Under this section, the State party is to briefly (3 pages maximum) update the information provided in its report with regard to:

- new bills or enacted legislation
- new institutions
- newly implemented policies
- newly implemented programmes and projects and their scope

Part IV

The following is a preliminary list of major issues (that does not contain issues already covered in Part I) that the Committee intends to take up during the dialogue with the State party. They do not require written responses. This list is not exhaustive as other issues might be raised in the course of the dialogue.

1.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girls,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born out-of-wedlock and children of migrant workers.
2. Child participation in the family, society and in schools, and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3. Complaints mechanisms that ar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children.
4. The role of the child in family policy.
5.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institutions and homes.
6. Birth registration.
7. The aims of, and values in, education.
8. The cost of education in kindergarten, middle and high schools.
9. Child abuse and the provision of counselling and recovery services for child victims.
10. Alternative care institutions and regul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caring for children.
11. Adoption.
12.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13.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14. Juvenile justice.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사회의에 앞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대표단이 준비한 서면답변

*서면답변에서 이탤릭으로 처리된 부분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사항임.

*이 문서의 별첨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예산, 민법, 호적법, 아동권리협약의 한글본'이므로 생략한다.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2차 한국정부보고서(CRC/C/70/Add.14)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문제제기(List of
Issues-CRC/C/Q/REPKO/2)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답변

-2003년 1월(CRC/C/RESP/26)-

part 1

A. 자료와 통계

1. 다음과 같이 분류된 자료(성, 나이, 소수자, 도시나 농촌지역)에 대한 1999-2001의 자료를 제시하라;

a)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수와 비율

<표1.a> 2000년도의 18세 미만 아동의 수와 비율

	아동의 수	비율(%)
전체인구	45,985,289	100.0
18세 미만 아동의 전체인구	11,686,350	25.4
성		
남	6,353,316	13.4
여	5,533,054	12.0
나이		
0-4세	3,130,258	6.8
5-9세	3,444,056	7.5
10-14세	3,064,442	6.7
15-17세	2,047,594	4.5
거주지역		
도시	9,572,429	20.8
농촌	2,123,858	4.6

출처:2000년 국가 호구조사

b) 외국인아동의 수와 비율(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를 포함)

<표1.b> 외국인 아동과 연소자의 수와 비율¹⁾

	1999		2000		2001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외국인	380.101	100.0	481.611	100.0	552.099	100.0
아동과 연소자	62.439	16.4	51.910	10.77	53.627	9.71
성						
남	31.849	8.4	27.337	5.67	28.477	5.15
여	30.590	8.0	24.573	5.10	25.150	4.55
나이						
0-5세	15.039	4.0	12.256	2.54	12.390	2.24
6-10세	13.884	3.7	13.683	2.84	13.304	2.40
11-15세	10.712	2.8	11.439	2.37	11.891	2.15
16-20세	22.804	6.0	14.532	3.01	16.042	2.90

출처: 법무부

2. 협약 4조의 견지에서, 1999-2002년의 지역별로 분류된 추가 자료,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예산 할당과 추이(국가예산과 지역예산의 비율에서)를 제시하고,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해 평가해 달라.

<표2.1> 정부 전체예산(단위:조 원)

년	1999	2000	2001	2002
예산(A)	83,685.1	88,736.3	99,180.1	105,876.7

a) 교육, 취학 전 기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표2.a> 교육예산(단위:조 원, %)

년	1999	2000	2001	2002
교육예산(B)	16,257.3	17,663.0	18,569.0	20,671.1
비율(B/A)	19.4	19.9	18.7	19.5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감

b) 보건, 초등·청소년 및 기타 아동관련 보건 서비스 포함

<표2.b> 아동보건복지 예산(단위:백만 원)

년	1999	2000	2001	2002
아동보건	6,267	6,666	9,405	11,595

1) 18세에서 20세 포함

c) 사회복지와 가족지원 프로그램

<표2.c> 사회복지와 가족을 위한 보조프로그램(단위:백만)

	1999	2000	2001	2002
사회 안보	436,531	323,740	797,048	796,058
사회복지, 가족 아동 보조	8,867	18,694	20,877	17,232

사회복지와 가족·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가정을 위한 무료급식계획과 저소득 또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중학교 수업료 지원을 포함한다. 사회보장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주택, 의료, 교육비에 대한 아동급여를 포함한다.

d)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대안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표2.d>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단위:백만 원)

	1999	2000	2001	2002
보육(day care)	125,297	145,959	170,560	210,280
대안 양육 (alternative care)	47,202	53,080	64,979	70,910

보육예산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육지원, 저소득 가정의 5세 아동에 대한 무료 보육, 보육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대안양육예산은 보호시설에 대한 보조금, 소년소녀가장세대 에 대한 지원, 위탁양육가정과 그룹홈에 대한 보조금, 입양관련 재정지원,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을 포함한다.

e) 소년사범

소년사범에 대한 예산은 교육 기능의 강화를 포함하여 소년원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표2.e> 소년사범에 대한 예산

년	1999	2000	2001	2002
예산(백만원)	35,249.9	40,198.5	45,316.3	49,402.6
추이(% , 전년도 비 교)	0.1	14.0	12.7	9.0

3. 다음과 같이 분류된 자료(성, 나이, 도시나 농촌지역)에 대한 1999-2001년의 자료를 제시하라:

a) 장애아동의 총수

<표3.a> 장애아동의 수

	수
전체 장애아동의 수	89,771
성	
남	58,056
여	31,175
나이	
0-4세	10,925
5-9세	30,925
10-14세	27,574
15-17세	21,141
지역	
도시	76,772
농촌	12,999

출처: 2000년 장애인에 대한 국가조사

b) 공·사립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 아동의 수

<표3.b> 취학 장애아동의 수²⁾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전체
1999년	1,677	33,290	11,070	7,706	53,743
2000년	1,745	33,936	10,968	8,083	54,732
2001년	1,765	32,178	11,086	8,867	53,896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c) 취학 연령인 장애 아동 중 미취학한 아동의 수

2001년 현재 취학 연령에 있는 장애아동중 미취학 아동의 수는 13,632명이다.

d)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 할당

정부는 5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게 무료 보육을 제공한다. 입양된 장애아동을 위하여 입양부 모에게 양육보조비가 제공된다. 양육보조비는 2002년에 월 5십만원이다.

<표3.d>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예산(단위:백만 원)

	1999	2000	2001
아동 보육(Child Edu-care)	4,500	5,000	5,760
입양된 장애 아동 급여 ¹⁾	91	91	91
장애 아동의 교육	239	318	397

*저소득가정의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급여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2)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등록된 아동 모두를 포함

4. 성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에 관한 1999-2001년의 자료를 (나이, 성별, 폭력의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해 달라: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2001년 발효로, 아동학대의 개념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구조 속에 반영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는 1차 기관은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2001년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현재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18개의 센터가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고된 2,606건의 사례 중 2,105건이 아동학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는 3부(part III)의 관련 항목을 참조하라.

a) 보고된 아동학대 사례 건수

<표4.a.1> 경찰에 보고된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복지법 위배

년	1999	2000	2001
사례 건수	102	60	90

<표4.a.2> 2001년에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처리한 아동학대 사례

	사례 건수
전체	2,105
성	
남	1,033
여	1,067
N/A	5
나이	
2세 미만 아동	224
3-5세	28
6-8세	388
9-11세	498
12-14세	437
15-17세	265
나이 불명	9
학대의 유형	
체벌	476
정서적 학대	114
성적 학대	86
방임	672
유기	134
복합적 학대	623

출처: 보건 복지부, 2001

b) 아동학대 피해자 중 회복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은 수와 비율
 <표4.b.1> 2001년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아동학대 피해자와 관련해 제공한 서비스

피해자	센터가 제공한 상담 서비스			다른 기관들과의 협조		기타		사후 관리 서비스
	피해자 가족	관련자	집단	다른 상담기관에 위탁	의료 기관에 위탁	일시 보호	기타	
7,228	10,412	4,849	7,102	7,006	841	15,633	2,787	1,955

<표4.b.2>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받은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보호 장소	사건의 수	비율(%)
피해자의 집	1,098	53.0
친인척의 보호	142	7.0
센터의 임시 보호	309	15.0
위탁 양육	10	0.5
시설	372	18.0
다른 기관에 위탁	138	7.0
기타	36	1.7
전체	2,105	100.0

<표4.b.3>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된 상담 서비스³⁾(단위: 사람의 수)

	7세 미만	7-13세	14-19세	전체
1999년	1,315	2,718	5,798	9,831
2000년	1,226	2,414	7,156	10,796
2001년	1,544	3,305	10,489	15,338

3) 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성범죄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법 23조에 기반한다.

5. 청소년 보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류된 통계를 제시해달라. 성병, HIV/AIDS, 조기 임신, 낙태, 약물 및 알콜 남용(가족안에서의 경우를 포함), 자살, 사고와 정신 건강 등.

<표5.1> 건강보험에 나타난 성병으로 인한 외래환자의 수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증			기타 성병		
	M	F	Sum	M	F	Sum	M	F	Sum	M	F	Sum
0-4세	158	149	307	52	64	116	33	26	59	235	407	642
5-9	55	35	91	35	104	139	59	47	106	247	733	980
10-14	50	46	96	27	39	66	20	12	32	207	570	777
15-19	164	125	289	4,152	459	4,611	633	107	740	711	3,670	4,381
전체	427	356	783	4,266	666	4,932	745	192	937	1,400	5,380	6,780

출처: 한국건강보험

<표5.2> HIV 바이러스 감염으로 판명되는 연령(1985-2000)

	남	여	전체
0-9세	9	1	10
10-19세	17	3	20

출처: 보건복지부

<표5.3> 1999년 청소년의 약물 및 알콜 이용율(단위:%)

	술	담배	수면제	본드흡입	가스흡입	대마초	최음제	암페타민
학생	60.2	35.4	4.2	1.5	1.0	0.9	-	0.8
근로청소년	91.0	53.0	3.0	2.1	4.2	-	-	-

출처: 문화관광부

<표5.4> 2001년 사망원인

	자살			사고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0-4세	-	-	-	698	419	279
5-9세	7	5	2	526	348	178
10-14세	23	15	8	297	197	100
15-19세	241	138	103	1,236	888	348
전체	271	158	113	2,757	1,852	8,408

출처: 보건복지부

<표5.5> 2001년 정신질환치료기관에 입원치료중인 환자의 수

	정신병원	정신요양소	재활기관	전체
0-9세	75	30	0	105
10-19세	634	28	9	671
전체	709	58	9	776

출처: 보건복지부

6. 연고지, 성별, 나이, 범죄 유형을 포함하여 1999-2001년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라;

a) 범죄 용의자인 연소자의 수

<표6.1> 범죄 용의자인 연소자의 수

년	1999	2000	2001
수	150,821	151,176	138,030

b) 형사절차에 처해져 법원의 선고로 처벌을 받은 연소자의 수와 처벌의 성격(사회봉사, 구금, 기타 유형의 처벌)

처벌의 성격:

아동과 연소자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법원 또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가 관할한다. 첫째, 형사법원에서 아동과 연소자는 징역,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동과 연소자를 구금시설로 2개의 소년교도소가 있다.

'보호관찰' 제도하에서 12-20세의 연소자가 받게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 협의의 보호관찰: 유죄가 확정된 자가 투옥되는 대신에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감육을 받게 되는 것.
- 사회봉사명령: 유죄가 확정된 자가 투옥 대신에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무급의 유용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봉사센터가 설립되었다. 사회봉사명령의 범위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와 자연재해 복구 참여가 포함된다.
- 수강명령: 전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투옥 대신에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재활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여기에는 보호관찰소나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소가 선정한 민간단체에서의 심리치료가 포함된다. 수강명령에는 약물예방 프로그램, 성범죄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보호관찰소의 웹사이트(www.probation.go.kr)를 참조해달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는 소년보호사건처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아동과 연소자를 다룬다.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6.e를 참고해달라.

<표6.b.1> 형사법원의 1차 재판에서 선고받은 아동/연소자의 수

년	나이	구금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1999	16세미만	203	157	48	10
	18세미만	770	1,042	99	12
2000	16세미만	773	745	207	45
	18세미만	1,107	1,558	511	45
2001	20세미만	2,109	2,875	564	61

출처: 사법연감

<표6.b.2>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연소자의 수⁴⁾

	1999	2000	2001
보호관찰	42,644	41,028	33,266
사회봉사명령	3,318	2,920	2,080
수강명령	196	195	233

출처: 법무부

c) 구금된 청소년의 수, 구금장소

<표6.c.1> 2002년 12월 현재 소년교도소에 수감중인 청소년의 수

곳	김천소년교도소	천안소년교도소	전체
수	475	681	1,156

출처: 법무부

<표6.c.2>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의 수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전체
1999년	6	43	174	415	996	1,123	2,757
2000년	5	35	220	512	993	1,027	2,792
2001년	6	58	234	495	937	965	2,695

출처: 법무부

d) 집행유예선고: <표6.b.1>참조.

e) 보호처분을 받은 연소자의 수와 보호처분의 성격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이 제도의 목적은 청

4) 소년법에 해당하는 사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에 사용되는 우선적인 도구가 보호처분이다. 일반적인 형사 처분과는 달리 보호처분에는 형사기록이 남지 않으며 따라서 비행청소년이 깨끗한 경력으로 출발할 수 있다.

소년법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의 성격

1. 후견인 또는 후견인을 대신하여 청소년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위탁
2. 단기 보호관찰
3. 보호관찰
4.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보호기관에 위탁
5. 병원이나 요양소 위탁
6. 단기 소년원 입소
7. 소년원 입소

소년원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훈련 및 교육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의 수는 표6.c.2를 참조하라.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소년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jschool.go.kr을 참조.

<표6.e.1> 소년보호사건 제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연소자의 수⁵⁾

	1		2		3		4		5		6		7		전체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28,599	[10,677]	[11,234]	920	14	1,621	1,194	32,348							
2000년	28,572	[10,783]	[10,414]	896	10	1,502	1,290	32,270							
2001년	6,057	[28,816]	[68,975]	717	7	1,420	1,314	27,314							

출처: 법무부

[]안의 숫자는 보호처분이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표6.e.2> 연령별 보호처분

	1999년	2000년	2001년
12-13세	5,222	5,587	2,696
14-15세	8,886	9,058	6,865
16-17세	12,386	11,836	10,843
전체	26,494	26,481	20,404

출처: 법무부

5) 여기서 연소자는 12-20세이다

f) 재범률

<표6.f> 재범수와 비율

	1999년	2000년	2001년
형사범죄 피의자인 연소자의 수(A)	150,821	151,176	138,030
범행전과가 있는 연소 범죄자의 수(B)	53,346	52,641	50,105
범행전과가 있는 범죄자 비율(B/A)	35.4	34.8	36.3

7. 특별보호조치와 관련해, 1999-2001의 아동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연도별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평가해 달라.

a) 매매춘, 포르노그래피,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과 재활 및 기타의 원조를 제공받은 아동의 수

<표7.a.1>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과 연소자⁶⁾

	1999년			2000년			2001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매매춘	4	61	65	1	54	55	2	39	41
강간 등	123	2,876	2,999	92	1,056	1,148	72	2,133	2,205
전체	127	2,937	3,064	93	1,110	1,203	74	2,172	2,246

출처: 대검찰청

매매춘: 윤락행위방지법 등에 규정된 매춘 및 관련 범죄

강간 등: 형법, 성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에 규정된 강간 및 관련범죄

<표7.a.2>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⁷⁾

	12세 미만	13-14세	15-16세	17-18세	전체
2001년	9	142	511	440	1,102

<표7.a.3> 보호 및 재활시설에 수용된 아동과 연소자의 수⁸⁾

	15세 미만	16-19세	전체
1999년	490		490
2000년	1,102		1,102
2001년	308	914	1,222

6) 20세 미만 피해자 통계

7) 18세 포함.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통계 수집

8) 윤락행위방지에 관한 법 11조에 근거한 보호 및 재활 시설

b) 노동을 하는 아동(공식·비공식 부문 포함)

<표7.b> 15-19세 노동아동의 성별 숫자(단위:1,000)

	1999년			2000년			2001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15-19세	185	217	402	197	207	404	151	195	346

출처:노동부

B. 일반적 이행조치들

1. 위원회에서 앞서 권고(CRC/C/15/Add.51, 1996)한 내용 중, 특히 입양과 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아직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보를 달라. 이런 상황을 극복할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라.

한국에서는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생후 5개월 미만이며 혼외출생아동이다. 대부분의 경우, 입양부모들은 입양을 비밀에 부치고 싶어하며 자신의 혈통의 아이로 입적하고 싶어한다. 이런 경향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전통문화에 기인하며, 이런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약이 규정한 바대로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해서만 입양이 허용된다면 잠재적 입양 부모들이 입양을 꺼려할 수 있으며 국내 입양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협약의 원칙에 동의하지만, 한국이 관련 조항을 완전히 이행하기에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 권고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에 있어서의 극도의 경쟁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입시제도를 개혁해왔다. 이 개혁은 개별 학생의 욕구와 적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성적만을 반영했던 과거의 학생 선발 과정을 지양하고, 대학입학을 위한 추가기준이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나 다양한 영역의 경시대회에서의 수상 등과 같은 특기들이 포함된다. "특별 전형"은 성적이 다소 떨어질지라도 특별한 재능이나 경험을 가진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의 문호를 개방했다.

추가로 '학생중심 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초·중등 교과과정이 개혁되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이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교과를 선택하는데 보다 많은 선택권을 갖는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성취도를 반영하여 심화/보충교과, 선택교과 등 차별화된 교과과정이 도입되었다.

2. 협약 9조(3), 21조(a), 그리고 40조(2)(b)(v)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달라.

한국정부는 협약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주기적으로 유보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유보를 철회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9조 3항에 대한 유보에 관해서는 이혼과 아동보호에 관련된 법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아동의 부모면접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여성의 지위를 강화

한 1990년 민법에서는 부모의 아동면접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21조 (a)항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입양에 대한 관계당국의 허가를 가까운 장래에 도입하기 어렵다.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호적 여론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할 것이다.

3. 국가 인권위원회의 수임사항, 기능, 예순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달라. 그리고 국가 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관련해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임사항과 기능에 관해서는, 별첨돼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장과 4장을 참고해달라.

국가인권위의 수임사항은 일반적인 인권문제를 포괄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가 아동권에 관한 구체적인 책임이 없을지라도 아동권의 증진은 국가인권위의 수임사항내에 있다. 2001년 설립된 이래로, 국가인권위는 아동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몇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국가인권위는 '아동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검토했다. 이 계획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정책조정실에서 조정할 것이다.
- 국가인권위는 소년사범 절차내의 아동과 청소년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조사해왔다.
- 국가인권위는 방임된 아동의 인권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하는 아동도서를 출판했다.
- 국가인권위는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지침서'를 출판했다. 이 책의 주요 독자는 교사들 뿐 아니라 학부모, 학교 당국자, 사회사업가이다. 이 책은 아동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의 교수방법과 도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는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관련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진정은 장애아라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이 거절당한 것에 대한 것이다.

2002년 국가인권위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첨 2를 참고해달라.

4. 자료수집체계가 18세 미만 모든 아동과 협약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의 권리를 분류 방식을 취하면서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

한국의 현행 정보수집시스템은 협약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주요 이유는 아동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법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의, 즉 18세 미만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예외이다. 아동권을 다루는 법과 정부기구는 다양한 연령대를 책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이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은 9-24세이며 문화관광부가 책임지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보호한다. 대부분의 법이 연령 집단을 두 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성인과 투표권이 없는 20세 미만의 연소자이다. 자료수집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 통계청은 대개 연령층을 5년 단위로 나누며 그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다. 그 결과 아동권과 관련된 자료수집은 협약이 포괄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분류방식을 취하면서 다루는데 부적절하다.

자료수집의 불충분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권리지료를 개발하도록 했다. 이 지표는 5년마다 아동권의 증진을 평가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권에 대한 자료 수집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아동권리지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는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백서형태로 출판될 것이다.

5. 협약 4조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1997년의 금융위기와 이어진 구조조정 속에서 협약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자원을 할당했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1997년 재정위기와 이어진 구조조정에 직면하여 한국정부는 협약에 열거된 아동의 권리르 f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생계비와 의료비, 중등교육 수업료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한시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00년, 보건복지부는 또한 아동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 위기의 결과 가정, 특히 아동이 체감하는 경제적 곤란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부가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체와 협력하여 빈곤이나 보호자의 방임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없는 학령기 아동에게 저녁을, 취학전 아동에게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혜아동의 수는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약 22,000명이다. 2002년에 그 수는 15,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수에 맞게 조정되어, 2000년에 7십억8천4백만원, 2001년 8십6억2백만원, 2002년 5십9억5천9백만원이다.

6. 정부 기구가 민간단체와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히 아동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 및 이행에 있어 시민사회 대표자의 참여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해달라.

자문위원회규칙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기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기관 조항에 관련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부는 관련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은 정책 결정에서부터 이행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된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육 정책의 기초와 이행에 참여한다. 이 위원회에는 전체 90명이 구성원이며,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총 등과 같은 12개의 민간단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그중 68명이 비정부기구 대표이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The Youth Fostering Committee)는 관련 부처 장관과 교육, 사회복지, 문화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해 깊은 지식과 넓은 경험을 가진 시민을 포함하여 3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계획과 연간 집행 프로그램, 중장기 청소년 육성정책 수립, 주요정책의 평가와 청소년보호기관의 개선

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Youth Committee)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7. 외국인 아동과 혼외출생아동의 출생시 등록문제를 포함하여 호주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달라.

호주제 또는 호적제도는 출생신고를 포함하며 민법과 호적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모든 가족에는 호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은 대개가 아버지인 호주아래 등록된다. 호주는 일가의 혈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이다(민법 778조)

민법에 따르면, 혼외출생아동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기 가족의 호적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민법 782조(1)). 혼외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한다(민법 782조(2)). 호적법은 아동의 출생신고서에 그 아동이 혼외 출생인지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호적법 49조(2)). 혼외출생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한 책임은 어머니가 진다(호적법 51조).

외국인 아동의 경우, 즉 한국인과 비한국인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 호적법은 출생신고서가 비한국인 부모의 이름과 국적과 함께 관계당국에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호적법 49조(2)).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나 아동의 아버지가 외국인일때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민법 781조)

호주제는 아버지의 혈통을 우선시하고 강조하여 성평등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주로 비판받아왔다. 예를 들어, 호주제 하에서 이혼한 어머니의 자녀는 설령 어머니와 같이 살고, 그 어머니가 재혼하여 현재 배우자의 호적에 자녀를 입적하길 원한다 해도 아버지의 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새로운 호적에 아동을 입적시키기 위해서는 계부와 그 호주의 동의 둘다가 필요하다(민법 784조). 이와 관련하여, 호주제 반대론자들은 호주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평등과 인간존엄성의 정신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호주제에 관련해서는 얼마간 토론이 되어져왔다. 지지자들은 호주제가 전통에 기반하며 전체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자들은 호주제의 역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도입되어 아주 짧으며 헌법이 보정한 성평등과 인간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내에서는 여성부가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2000년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은 이혼한 어머니의 자녀가 계부의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추가로, 2001년 두 개의 지방법원이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의 합헌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개정되거나 폐지될 것이다.

8. 가정과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의 차별 관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달라. 교육부

의 지침과 교칙이 어느 때에 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체벌은 소년원과 보호기관과 같은 기관내에서 금지돼 있다. 초·등교육법 18조와 시행령 31조7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학생에 대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⁹⁾

교육부는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내린 바 없으며 각급 학교이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체벌의 이용은 교칙에 따른 것이며, 교칙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체벌에 관련된 교칙은 학교마다 다르다. 일부 교칙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체벌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고 일부 교칙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며, 일부교칙은 체벌에 관한 어떤 규정도 없다.

현재로서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 조직, 관련 민간단체, 지방 교육청의 의견을 수집했으나 체벌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part II

아동권리협약의 한국어판은 부록 VI¹⁰⁾로 첨부돼 있다.

part III

1. 새로운 법률 또는 입법

a.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2000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비(非)차별과 생명권, 생존과 발달, 아동이익최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으로 인한 또다른 진전은 아동학대 개념의 도입이다. 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금지조항이 단 한 개 조항으로 금지의 적용이 관련아동의 보호자에게만 한정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과 더불어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는 아동학대사태를 보고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전화설치와 아동 피해자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립이 있다. 추가로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보고할 수 있는 반면 교사, 의료인 등 아동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동학대사건을 관계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9) 초·중등교육법 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학생의 징계 등) 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10) 외교통상부 웹사이트(www.mofat.go.kr)는 아동권리협약을 한글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b. 성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 (2000년 2월 발효, 2001년 부분 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다(1조). 이법이 보호하는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 예를 들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주선하는 것, 청소년을 사고 파는 것,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의 제동과 상담시설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추가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권한을 갖고 있다.

2. 새로운 기구들

a. 아동학대예방센터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재, 1개의 중앙센터와 17개의 지역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아동학대신고를 위한 24시간 전화 운영이 이들 센터의 책임이다. 지역 센터는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는데 여기에는 방문조사가 포함되며 아동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센터는 아동학대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같은 지역 센터의 업무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중앙센터는 또한 아동학대 의무신고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례보고서(최초보고서는 2002년에 발간되었다) 발간을 한다. 아동학대방지 캠페인이 조직돼왔으며 2명의 유명인이 센터와 협력하여 아동학대예방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b. 여성부

여성부는 성평등과 여성권한 증진을 위한 정부 내 focal point로서 2000년에 설립되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가 여성부의 책임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상담센터와 성폭력피해자상담소의 운영이 여성부의 감독하에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그 사례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신고되면 이들 기관에 위탁될 수 있다. 또한 여아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과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할 것이 여성부에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차별은 여러 면에서 성평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 문제는 여성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중요한 경우이다.

c.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는 part I의 B section의 3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새로운 정책들

아동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2001년, 국무총리 산하 아동관련 문제를 책임지는 관계 당국은 아동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아동보호와 육성에 관한 5개 분야 48개 조치를 담고 있다. 즉,

아동권의 강화, 아동 보건과 복지의 증진, 아동안전의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이다. 이 계획에 포함된 일부 조치에는 아동권리지표의 개발, 발달장애 자폐증을 가진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의 확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이 포함된다.

4. 새로운 프로그램과 계획들, 그 범위

a.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청소년에게 닷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자, 청소년 성매매업소의 업주, 아동포르노의 생산, 수입, 수출과 관련된 자, 청소년 매매 또는 성학대와 관련된 자. 신상공개 대상자는 형량, 범죄유형, 피해자의 나이, 범죄 성격,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상공개의 범위는 이름, 나이, 출생연도, 직업, 주소, 범죄내용이다. 신상공개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와 관련된 개인의 의견 취합의 두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1,283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b. 모성보호 강화

모성과 자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근로기준법 72조). 2001년에는 또한 정부가 육아휴직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도입되었다. 급여의 양은 월 2십만원이며 30만원으로 증가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고용보험법과 시행령).

c.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도시지역의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계획은 시행중에 있다. 2004년까지 모든 중학교 학생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10억원)

년도	2002	2003	2004
수혜자	1학년	1,2학년	모든 중학생
예산	267.8	545.0	946.4

*여기서 예산은 입학금, 등록금, 교과서대금에 해당한다.

Written Reponses to the List of Issues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Contents

		pages
Part I	A. Data and Statistics	1-11
	B.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12-17
Part II	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17
Part III	Updated Information on Legislation, Institutions, Policies and Programmes	18-20
Annex I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nex II	2002 Budge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ex III	Civil Act (Part)	
Annex IV	Family Register Act (Part)	
Annex V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Korean	

Part I

A. Data and statistics

1. Please provide disaggregated data (by gender, age, minority group, urban or rural areas) covering the period between 1999 and 2001 on:
- a)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18 living in the State party;

< Table 1.a > Number and proportion of children under 18 in 2000

	No. of persons	Ratio(%)
Total population	45,985,289	100.0
Total population under age 18	11,686,350	25.4
Gender		
Male	6,353,316	13.4
Female	5,533,054	12.0
Age		
0-4 years old	3,130,258	6.8
5-9 years old	3,444,056	7.5
10-14 years old	3,064,442	6.7
15-17 years old	2,047,594	4.5
Residence		
Urban	9,572,429	20.8
Rural	2,123,858	4.6

Source: 2000 national census on population and house

- b)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foreign children, including those from undocumented migrants.

< Table 1.b > Number and Proportion of Foreign Children and Minors¹

	1999		2000		2001	
	Number	Ratio(%)	Number	Ratio(%)	Number	Ratio(%)
Foreigners	380,101	100.0	481,611	100.0	552,099	100
Children & Minors	62,439	16.4	51,910	10.77	53,627	9.71
Gender						
Male	31,849	8.4	27,337	5.67	28,477	5.15
Female	30,590	8.0	24,573	5.10	25,150	4.55
Age						
0-5 years old	15,039	4.0	12,256	2.54	12,390	2.24
6-10 years old	13,884	3.7	13,683	2.84	13,304	2.40
11-15 years old	10,712	2.8	11,439	2.37	11,891	2.15
16-20 years old	22,804	6.0	14,532	3.01	16,042	2.90

Source: Ministry of Justice

2. In light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please provide additional disaggregated data (by region) for 1999-2002, budget allocations and trends (in percentage of the national and regional budgets) alloc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evaluating also the priorities for budgetary

¹ Including those are aged from 18 to 20 years

expenditures given to the following:

< Table 2.1 > Total Budget of the Government (unit: billion won)

Year	1999	2000	2001	2002
Budget (A)	83,685.1	88,736.3	99,180.1	105,876.7

a) Education, including pre-school, primary, secondary and special;

< Table 2.a > Education budget (unit: billion won, %)

Year	1999	2000	2001	2002
Education Budget (B)	16,257.3	17,663.0	18,569.0	20,671.1
Ratio (B/A)	19.4	19.9	18.7	19.5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b) Health care, including primary, adolescent and other child related health services;

< Table 2.b > Child Health Care Budget (unit: million won)

Year	1999	2000	2001	2002
Child Health Care	6,267	6,666	9,405	11,595

c) Social welfare and support programme for families;

< Table 2.c > Social welfare and support programme for families (unit: million won)

	1999	2000	2001	2002
Social security	436,531	323,740	797,048	796,058
Social welfare, family & child support	8,867	18,694	20,877	17,232

Social welfare and family and child support cover free meal plans for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and tuition fee assistance for secondary education of children of low-income or single parent households. Social security covers child benefits for housing, medical and educational costs of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d) Protection of children who are in need of alternative care including the support of care institutions;

< Table 2.d > Budge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unit: million won)

	1999	2000	2001	2002
Day Care	125,297	145,959	170,563	210,280
Alternative Care	47,202	53,080	64,979	70,910

Day care budget covers child care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free care for 5-years-old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and subsidy for day care institutions. Alternative care budget covers subsidy for care institutions, assistance to child-headed households, subsidy for foster homes and group homes,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adoption, and operation of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e) Juvenile justice

Budget for juvenile justice is used for operation and renovation of juvenile training schools, including enhancement of their educational function.

< Table 2.e > Budget Allocated for Juvenile Justice

Year	1999	2000	2001	2002
Budget (million won)	35,249.9	40,198.5	45,316.3	49,402.6
Trend (% compared with previous year)	0.1	14.0	12.7	9.0

3. Please provide disaggregated data (by gender, age, urban or rural areas) covering the period 1999-2001 on the:

a) Total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Table 3.a >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Number
Total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89,771
Gender	
Male	58,056
Female	31,175
Age	
0-4 years old	10,925
5-9 years old	30,925
10-14 years old	27,574
15-17 years old	21,147
Region	
Urban	76,772
Rural	12,999

Source: 2000 National Survey on the Disabled

b)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rolled in private and public schools;*

< Table 3.b >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rolled in Schools²

Year	Age	3~5	6~11	12~14	15~17	Total
1999		1,677	33,290	11,070	7,706	53,743
2000		1,745	33,936	10,968	8,083	54,732
2001		1,765	32,178	11,086	8,867	53,896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school age that do not attend school;*

In 2001, the number of children of school age with disabilities that did not attend school was 13,632.

d) *Budget allocation in favou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provides free day care for disabled children under 5. For adopt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sistance for child care is provided to adoptive parents. The amount of this benefit in 2002 is 500,000 won per month.

< Table 3.d > National Budge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it: million won)

	1999	2000	2001
Child Edu-Care	4,500	5,000	5,760
Benefit for Adopt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³	91	91	91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239	318	397

* Child benefit for disabled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was introduced in 2002.

4. *With reference to child abuse, including sexual abuse, please provide disaggregated data for the period 1999-2001 (by age, gender and types of violations reported), on the:*

With th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which came into effect in 2001, the concept of child abuse was integrated into the legal framework to protect children's rights. According to the newly amended Act, the primary institutions to which cases of child abuse may be reported are the police and the Centre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The Centre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was found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in 2001 and there are currently 18 Centres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 Among the 2,606 cases of abuse reported to the Centre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nationwide, 2,105 cases were confirmed as constituting child abuse. On th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e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please refer to the relevant section of Part III.

a) *Number of cases of child abuse reported to police or social or other services;*

< Table 4.a.1 > Number of cases of child abuse reported to police: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Year	1999	2000	2001
Number of cases	102	60	90

² Children enrolled both in special schools for disabled children and in ordinary schools with special classes for disabled children.

³ This proportion of budget is included in the item of Alternative Care of < Table 2.d >.

< Table 4.a.2 > Cases of child abuse dealt with by the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2001

	Number of cases
Total	2,105
Gender	
Male	1,033
Female	1,067
N/A	5
Age	
Under 2 years old	224
3~5 years old	28
6~8 years old	388
9~11 years old	498
12~14 years old	437
15~17 years old	265
Unknown	9
Type of Abuse	
Corporal/Physical punishment	476
Psychological/Emotional Abuse	114
Sexual Abuse	86
Neglect	672
Abandonment	134
Multiple Type of Abuse	623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1

b) *Number and proportion of victim that have received counselling and assistance in recovery.*

< Table 4.b.1 > Service provided to and related with victims of child abuse by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2001

Victims	Counselling service provided by the Centres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Other		Follow-up service
	Family of victims	Related persons	Group	Referral to other Counselling institutions	Referral to Medical institutions, etc.	Temporary protection	Other	
7,228	10,412	4,849	7,102	7,006	841	15,633	2,787	1,955

< Table 4.b.2 > care of victims of child abuse after receiving services for recovery

Place of care	Number of cases	Percentage (%)
Victims' home	1,098	53.0
Relatives' care	142	7.0
Temporary care by the Centres	309	15.0
Foster Care	10	0.5
Institutions	372	18.0

Referral to other agencies	138	7.0
Other	36	1.7
Total	2,105	100.0

< Table 4.b.3 > Counselling Services Provided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⁴
(unit: number of persons)

Year	Age	Under 7	7~13	14~19	Total
1999		1,315	2,718	5,798	9,831
2000		1,226	2,414	7,156	10,796
2001		1,544	3,305	10,489	15,338

5. Please provide disaggregated data on adolescent health, including on the incidence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TDs), HIV/AIDS, early pregnancy, abortion, drug and alcohol abuse (including within the family), suicide, accidents and mental health concerns.

< Table 5.1 > Number of STDs outpatients registered for health care insurance

Age	Syphilis			Gonococcal infection			Chlamydial diseases			Other STDs		
	M	F	Sum	M	F	Sum	M	F	Sum	M	F	Sum
0~4	158	149	307	52	64	116	33	26	59	235	407	642
5~9	55	36	91	35	104	139	59	47	106	247	733	980
10~14	50	46	96	27	39	66	20	12	32	207	570	777
15~19	164	125	289	4,152	459	4,611	633	107	740	711	3,670	4,381
Total	427	356	783	4,266	666	4,932	745	192	937	1,400	5,380	6,780

Sourc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Table 5.2 > Age when proved as HIV (1985-2000)

Age	Gender		
	Male	Female	Total
0-9	9	1	10
10-19	17	3	20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able 5.3 > Drug and alcohol use rate of the adolescents in 1999 (unit: %)

	Alcohol	Tobacco	Sleeping drug	Bond	Gas	Hemp leaf	Narcotics	Amphetamines
Students	60.2	35.4	4.2	1.5	1.0	0.9	-	0.8
Working Youth	91.0	53.0	3.0	2.1	4.2	-	-	-

⁴ Counselling services provided by Counselling Centres established base on the Article 23 of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Sourc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Table 5.4 > Cause of death in 2001

Age	Total	Suicide		Accident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0-4	-	-	-	698	419	279
5-9	7	5	2	526	348	178
10-14	23	15	8	297	197	100
15-19	241	138	103	1,236	888	348
Total	271	158	113	2,757	1,852	8,408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able 5.5 > Number of inpatients in mental health institutions in 2001

Age	place	Mental hospitals	Mental sanatoriums	Rehabilitation institutions	Total
0-9		75	30	0	105
10-19		634	28	9	671
Total		709	58	9	776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6. Please provide statistical data (including, where relevant, by gender, age, type of crimes) covering the period between 1999 to 2001 on the:

- a) Number of minors suspected of criminal offence;

< Table 6.a > Number of minors suspected of criminal offence

Year	1999	2000	2001
Number	150,821	151,176	138,030

- b) Number of minors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 who were sentenced by court to sanction, and the nature of sanctions (community service; detention; other types of sanctions);

Nature of sanctions:

Children and minor criminals may be dealt with by either criminal courts or juvenile departments of a family or district court. Firstly, at the criminal court, children and minors can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a suspended sentence, fine and suspension or imposition of sentence. They can also be sentenced to probation and parole.

There are two Juvenile Prisons for imprisonment of children and minors.

Under the scheme of "Probation and Parole", minors aged 12 to 20 may be sentenced to sanctions as follows:

- Probation and Parole in its narrow sense: a system in which convicted offenders are to be placed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a probation and parole officer, while leading a free life in lieu of incarceration.
- Community Service Order: a scheme by which convicted offenders can serve the society by

providing unpaid useful labour servic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leading a free life in lieu of incarceration. To implement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he Community Service Centre has been established. The scop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covers service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participation in natural disaster recovery.

- Attendance Centre Order: a scheme by which convicted offenders who need professional assistance are to receive rehabilitation, including psychiatric treatment in the Probation and Parole Office or other non-profit organisations designated by the Probation and Parole Off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leading a free life in lieu of incarceration. Under the scheme of an Attendance Centre Order, offenders are placed in various education programmes such as drug abuse prevention programmes and sexual offence prevention programmes.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cheme of "Probation and Parole", please refer to the website of the Korean Probation and Parole Office, www.probation.go.kr.

The Juvenile Department of a family court or a district court deals with children and minors who commit minor crimes as Juvenile Protection Cases. For the system of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the Protective Disposition imposed by the system on those children and minors, please refer to the item 6.e.

< Table 6.b.1 > Number of children/minors sentenced by criminal courts at the first trial

Year	Age	Imprisonment	Suspended sentence	Fine	Suspension of imposition of sentence
1999	Under 16	203	157	48	10
	Under 18	770	1,042	99	12
2000	Under 16	773	745	207	45
	Under 18	1,107	1,558	511	45
2001	Under 20	2,109	2,875	564	61

Source: Yearbook of Justice

< Table 6.b.2 > Number of minors sentenced to Probation and Parole⁵

	1999	2000	2001
Probation & parole in narrow sense	42,644	41,028	33,266
Community service order	3,318	2,920	2,080
Attendance Centre order	196	195	233

Source: Ministry of Justice

- c) Number of juveniles detained and imprisoned, the location of their detention or imprisonment (e.g. police stations, jails or others);

< Table 6.c.1 > Number of juveniles imprisoned at Juvenile Prisons as of December 2002

Place	Kimchon Juvenile Prison	Chonahn Juvenile Prison	Total
Number	475	681	1,156

Source: Ministry of Justice

< Table 6.c.2 > Number of children consigned to Juvenile Training Schools⁶

⁵ Does not include cases which fall under the Juvenile Act

⁶ Consignment to Juvenile Training Schools under the system of Juvenile Protection Case. Juvenile Training School is the current official name of Juvenile Reformatory.

Age	12	13	14	15	16	17	Total
1999	6	43	174	415	996	1,123	2,757
2000	5	35	220	512	993	1,027	2,792
2001	6	58	234	495	937	965	2,695

Source: Ministry of Justice

- d) Number of suspended sentences: Please refer to <Table 6.b.1>

- e) Number of minors subject to protection procedures, and the nature of protective measures imposed;

The system of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Protective Dispositions imposed by the system are stipulated in the Juvenile Act. According to the Act,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to ensure sound nurturing of juveniles and the primary tool used is Protective Dispositions. Protective Disposition is a special criminal disposition, but, unlike general criminal dispositions, does not carry criminal records and therefore enable juvenile offenders to start over with a clean slate.

- Nature of protective measures (Protective Dispositions) imposed by the Juvenile Act
- No.1: Consignment to the care and custody of the guardian or any person who can provide protection for the juvenile in substitution for the guardian
 - No.2: Short term probation
 - No.3: Probation
 - No.4: Consignment to a child welfare institution under the Child Welfare Act or another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 No.5: Referral to a hospital or a sanatorium
 - No.6: Consignment to a Juvenile Training School for a short-term
 - No.7: Consignment to a Juvenile Training School

Juvenile Training Schools are operated as training and education institutes for the juvenile offenders. For the number of juveniles consigned to Juvenile Training Schools, please refer to < Table 6.c.2 >.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Juvenile Training School, please refer to the website, www.jschool.go.kr.

< Table 6.e.1 > Number of Minors Subject to Protective Dispositions by the System of Juvenile Protection Cases⁷

No.	1	2	3	4	5	6	7	Total
1999	28,599	[10,677] ⁸	[11,234]	920	14	1,621	1,194	32,348
2000	28,572	[10,783]	[10,414]	896	10	1,502	1,290	32,270
2001	6,057	2 [8,816]	6 [8,975]	717	7	1,420	1,314	27,314

Source: Ministry of Justice

< Table 6.e.2 > Number of Children Subject to Protective Disposition by Age

Year	1999	2000	2001
Age			

⁷ Minors here are those who are aged from 12 to 20.

⁸ Numbers in brackets mean the measure of protective disposition concerned is imposed together with other measures.

12 and 13	5,222	5,587	2,696
14 and 15	8,886	9,058	6,865
16 and 17	12,386	11,836	10,843
Total	26,494	26,481	20,404

Source: Ministry of Justice

f) *Percentage of recidivism cases*

< Table 6.f > Number and Percentage of recidivism cases

	1999	2000	2001
Number of minors suspected of criminal offence (A)	150,821	151,176	138,030
Number of minor offenders with criminal record (B)	53,346	52,641	50,105
Percentage of offenders with criminal record (B/A)	35.4	34.8	36.3

7. *With reference to special protection measures please provide, and evaluate, statistical data (including by gender, age, region and municipality, per year) between 1999 and 2001 on the number of children:*

a) *Involved in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trafficking, and the number of children provided with access to rehabilitation and other assistance;*

< Table 7.a.1 > Children and Minor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⁹

crimes	1999			2000			2001		
	M	F	Total	M	F	Total	M	F	Total
Prostitution ¹⁰	4	61	65	1	54	55	2	39	41
Rape, etc. ¹¹	123	2,876	2,999	92	1,056	1,148	72	2,133	2,205
Total	127	2,937	3,064	93	1,110	1,203	74	2,172	2,246

Sourc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 Table 7.a.2 > Children involved in sex trade¹²

Year	Age	Under 12	13~14	15~16	17~18	Total
2001		9	142	511	440	1,102

< Table 7.a.3 > Number of Children and Minors Housed at Protection & Rehabilitation Facilities¹³

Year	Age	under 15 years	16~19 years	Total
1999			490	490
2000			1,102	1,102

⁹ Data on victims below 20 years of age.

¹⁰ Prostitution and related crimes under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¹¹ Rape and related crimes under the Criminal Ac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thereof

¹² Those are aged 18 included. Data collected based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¹³ Protection & Rehabilitation Facilities based on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2001	308	914	1,222
------	-----	-----	-------

Sour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b) *Involved in child labour (formal and informal sector)*

< Table 7.b > Number of working children aged 15 to 19 by gender (unit: 1,000)

Age	Year	1999			2000			2001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15 to 19		185	217	402	197	207	404	151	195	346

Source: Ministry of Labour

B.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1.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reasons some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Committee's previous observations (CRC/C/15/Add.51, 1996)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in particular those related to adoption (para. 15), and the aims of education (para. 16). Please explain how the State party envisages overcoming this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90% of the adopted children are aged under 5 months and are born out of wedlock. In most cases, adoptive parents have a strong tendency not to disclose adoption but to want the child registered as their biological child. This tendency can be attributed to the traditional culture which places great importance to the purity of bloodline, a notion which is changing gradually. In these circumstances, if adoption requires authorisation from competent authorities, as provided by the Convention, it may discourage potential adoptive parents from going through adoption, resulting in a decrease of domestic adoption. Therefore, though essentially in agreem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with regard to the issue of adoption, the Republic of Korea needs more time to fully implement the relevant provisions due to the abovementioned cultur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option.

To address the extreme competitiveness of education, as commented on by the Committee through the Committee's previous observa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s reformed the system of matriculation. The reform is geared toward catering to the needs and aptitude of individual students. Accordingly, departing from the past student selection process which reflected the students' academic records only, a set of additional criteria for granting admission to university was developed, which includes other merits such as outstanding records of volunteer service and winnings in contests in a variety of fields. The "Special Selection" process opens door for students with special talents or experiences to enter colleges even if their scholastic achievement is less desirable.

In addition, educational curriculum for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was reformed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student-centred education'. For example, under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0, students have more choices in selecting their own curriculum. A differentiated curriculum was also introduced to reflect the different levels of academic achievement among students including a Level Differentiated Curriculum, an In-Depth/Supplementary Differentiated Curriculum and an Elective Differentiated Curriculum.

2. *Please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s considering withdrawing its reservations to art. 9(3), 21(a), and 40(2)(b)(v).*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arefully and periodically reviewing its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with a view to withdrawing them, but, deems it premature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due to the existing conflicts with domestic laws. Regarding the reservation to Article 9(3), the relevant laws with regard to divorce and custody of children are still in progress and it would take some time to legally guarantee the right of children to maintain contact with their other parent. The right of a divorced parent who does not have custody to maintain contact with children was recognised by the Civil Act only in 1990, reflecting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of women.

With regard to Article 21(a) on the authorisation for adoption,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this requirement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reasons mentioned previously. In order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civil society to promote public opinions favourable to their withdrawal while making every effort to change its laws and systems.

3. *Please provide details regarding the mandate, functions and budge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whether it has a specific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child rights.*

With regard to the mandate and func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ereafter Commission), please refer to the Chapters III and IV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which is attached herewith as Annex I.

The mandate of the Commission covers human rights issues in general and therefore, though the Commission

does not have a specific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child rights, promotion of child rights is within the mandate of the Commissi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1, the Commission has made various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child rights. Some examples of such efforts are as follows:

- The Commission has review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Rearing', which has been coordinat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ime Minister.
- The Commission has investigated the human rights protection programme for children and juveniles within the procedure of juvenile justice.
- The Commission has published a book for children, with the theme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abandoned children and preventing child abuse.
- The Commission has published a 'Basic Guide Book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teachers. The targeted readers of the book are parents, school administrators and social workers, in addition to teachers. It provides guidelines on teaching methods and tool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children's rights.
- The Commission is reviewing a petition on discrimination against a disabled child, with regard to the rejection of admission to a kindergarten on the ground of the disability of the child concerned.

With regard to the budge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or the year of 2002, please refer to Annex II.

4. *Pleas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system for data collection and whether it covers in a disaggregated way all children under 18 and all areas under the Convention.*

The current system for data collection in Korea is insufficient to cover all children under 18 and all areas under the Convention, mainly because most domestic laws related to children's rights do not adopt the definition of the child provided by the Convention, namely, those under 18 years of age, with a few exceptions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Laws and governmental bodies dealing with children's rights have mandates to various age groups. For example, youth or juveniles defined by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re those aged from 9 to 24.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protects youth under 19. But most laws divide age groups into two classes, adults and minors who are under 20 years of age and do not have the right to vot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main governmental body on data collection, usually classifies age brackets by 5 years and produces statistics accordingly. As a result, data collection with regard to children's rights is inadequate to address all area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a disaggregated way.

To address the insufficiency of data collection, the Ministry of Welfare and Health has commissioned the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o develop a Children's Rights Index to be used in the evaluation of the progress in children's rights, carried out every 5 years. Therefore, we expect vast improvements in data collection on children's rights.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using the Children' Rights Index will be published in the form of a White Paper every 5 years starting from 2005.

5. *In light of article 4, please explain how the State party has allocated resources in the wake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subsequent restructuring in order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In the face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subsequent restructur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de efforts to ensure children's rights a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For example, it operated time-limited social welfare programmes, providing assistance to cover living and medical cost and tuition for secondary education.

In 2000,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so started a programme providing free meals to children in an effort to cushion the economic hardship felt by families, especially children,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crisis.

While a similar programme ru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vides lunch to school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provides dinner to school children, and breakfast and lunch to preschoolers who are unable to have regular meals either due to poverty or due to a lack of a care taker.

The number of children who benefited from the programme run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around 22,000 for 2000 and 2001 respectively. In 2002, the number declined to around 15,000. The amount of budget allocated for the scheme has been adjusted as the number of children requiring the support has decreased from 7,084 million won in 2000 to 8,602 million won in 2001 and to 5,959 million won in 2002.

6. *Pleas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how governmental institutions cooperate with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the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for children.*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Regulations on Consultative Committees, governmental bodies may set up a consultative committee on policy-making, comprising of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s. The expert opinions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are sought and taken into account at all stages from the policy-making to implementation. For example, the Consultative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articipates in the drafting and implementation of main education policies. Of the total number of 90 members, 68 are non-government representatives, including 12 NGO representatives from such organisations as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the National Parents Group for a Truthful Education, and the Korea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The Youth Fostering Committee,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is composed of 30 members, ministers of relevant ministries and civilians with profound knowledge and wide experience with respect to the nurturing of youth in the fields of education, labour, social welfare, and culture. The Committee deliberates a basic plan for youths and a yearly executive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medium-term and long-term youth fostering policies and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major policies and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for protecting the youth.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llows young people to voice their views through a Youth Committee, which allows them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7. *Pleas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householder system of registration, including how foreign children and children out of wedlock are registered at birth.*

The householder system of registration, or family register system, which includes a birth report, is regulated by the Civil Act and the Family Register Act.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two Acts are enclosed as Annex III and IV.) The core of the system is that every family should be headed by a householder. In other words, families are registered under the headship of the householder, usually the father. The householder or the head of the family is a person who has succeeded the family lineage or has set up a branch family, or who has established a new family or has restored a family for any other reason (Article 778 of the Civil Act).

According to the Civil Act, the father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may enter the child in his family register (Article 782(1)). If for any reason it is impossible for a child born out of wedlock to have its name entered in its father's family register, the child may be entered into its mother's family register. A child shall establish a new family, should both options be unfeasible (Article 782(2)). The Family Register Act prescribes that the birth report of a child should state whether the child was born out of wedlock (Article 49(2)).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birth report of a child born out of wedlock is the mother of the child. (Article 51 of the Family Register Act)

In case of a foreign child, namely a child born between a Korean and a non-Korean, the Family Register Act provides that his/her birth report should be submitted to the relevant authority with the name and nationality of the non-Korean parent (Article 49(2) of the Family Register Act). A child shall succeed his or her father's surname, but when the father of a child is a foreigner, the child may succeed the mother's surname (Article 781 of the Civil Act).

The householder system or the family headship system has been criticised mainly because of the emphasis on the priority of paternal lineage and the ensuing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For example, under the system, the children of a divorced mother will be forced to keep the surname of the father, even when the mother, who has the custody, remarries and wishes to enter the children in her current spouse's family register. For the registration of children into this new family, the consent both from the stepfather and

from the head of the family to which they belong is required (Article 784 of the Civil Act). In this regard, the opponents of the system argue that it violates the spirit of gender equality and human dign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debates on the householder system or the family headship system for some time. On one hand, the supporters argue that the system is based on the tradition and has been the nucleus of the society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the opponents argue the history of the system, introduc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s fairly short and it violates the spirit of gender equality and human dign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ithin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as been advocating the latter's position. The draft revision of the Civil Act, submitted by the Government in 2000, includes new provisions which allow the children of a divorced mother to take the surname of their stepfather. Currently, the draft revision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in 2001, two district courts formally asked fo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pertaining to the householder system. I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the articles concerned are not in accord with the Constitution, they will be revised or nullified.

8. *Please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practice of corporal punishment within the family, in schools and in other institutions. Please explain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guidelines and school regulations permit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Corporal punishment is banned in institutions, such as Juvenile Training School and care institutions.

According to Article 18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n Discipline of Students and Article 31(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the head of a school may impose corporal punishment to students when it is deemed educationally inevitable.¹⁴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oes not lay out any concrete guidelines on when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is permitted, leaving it up to the discretion of each school.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depends on school regulations, which are devised by participation of or reflecting opinion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School regulations vary from school to school with regard to corporal punishment: some provide concrete rules on when and how corporal punishment is allowed; some ban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altogether; and some have no rules on that issue.

At present, there is no consensus on banning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Recently, according to the advi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llected opinions from teachers'

¹⁴ Article 18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n Discipline of Students

(1) The schoolmaster of a school may discipline or otherwise guide students, under the conditions as determin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school regulations, as deemed necessary for education: Provided, That he shall not expel students in the process of compulsory education from school; (2) Where the schoolmaster of a school intends to discipline any students, he shall go through due formalities such as presenting the student concerned or his parents an opportunity to state his or their opinions.

Article 31(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Where the head of a school provides guidance referred to in the purview of Article 18(1) of the Act, it shall be conducted by methods such as discipline and admonition which do not give physical pain to students, except in educationally inevitable circumstances.

associations, relevant NGOs,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and heads of schools, but a consensus was not reached on this issue.

Part □

A copy of the 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Korean, which i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ttached as Annex V.¹⁵

Part □

1. New bills or enacted legislation

a.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Child Welfare Act was wholly amended in 2000. The newly amended Act stipulates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the priority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other improvement which the amendment has brought i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hild abuse into the Act. The previous version of the Child Welfare Act had only one provision for the prohibition of child abuse, but the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was limited to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child concerned. The newly amended Act, in addition to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provides the legal framework to take measures against child abuse such as the installation of 24 hours emergency telephone lines to be used for reporting child abuse cases and the establishment of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which provide protective services to the child victims. In addition, while any person may report child abuse cases when he/she finds one, persons who are working in fields related to children, such as teachers and medical practitioners, have the duty to report child abuse cases to the relevant authorities.

b. Enactment of the Act on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entry into force in February 2000, partly amended in 2001)

The purpos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is "to guarantee youth human rights and facilitate their growth as sound members of society by protecting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purchasing or aiding the purchase of sex with youth or making or distributing obscene materials taking advantage of youth. (Article 1)" The youth protected by the Act are those below 19 years of age. Pursuant to this Act, offenders of sex crimes that involve youth, such as paying for sex with youth, mediation of sex with youth, the selling and buying of youth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may be punished. For the victims of sexual abuse against youth, the Act provides protective measures and the operation of counselling facilities. In addition,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is authorised to disclose to the public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ose who have committed crimes under the Act and have been sentenced by courts.

¹⁵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s (www.mofat.go.kr) provides the Conven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 both in English and in Korean.

242

2. New Institutions

a.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ccording to the newly amended Child Welfare Act,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were established in 2001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t present, a National Centre and 17 local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re in operation. The operation of the 24-hour telephone hotline for reporting child abuse is their responsibility. Local Centres investigate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including by conducting visits, and providing remedial services to the victims and th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The National Centre is in charge of the coordination of the work of the local Centres, such as the operation of a database on the management of child abuse. The National Centre also develops programmes for the education of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shes annual national reports on child abuse (the first report was published in 2002). Campaigns against child abuse have been organised and two celebrities are working as publicity ambassador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es.

b.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as established in 2000 as the focal point within the Government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re within the mandate of the Ministry. Accordingly, the operation of Centres for Counselling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Centres for Counselling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Victims of child abuse may be referred to those Centres if their cases are reported as domestic or sexual violence. The Ministry is also expected to play a role addressing the issue of discrimination not only against girls but against foreign children and children born out-of-wedlock because, in many respects, discrimination against such children is closely related to gender equality in Korea. The issue of the family register system is a prominent example of the role the Ministry expected to play.

c.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gard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1, please refer to item 3 of Section B of Part I.

3. Newly Implemented Policies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Rearing

In 2001, a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Rearing was formulat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n charge of child-related issu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Prime Minister. The Plan devises 48 measures in the five areas for child protection and rearing, namely, the enhancement of children's rights, improvement of the health and welfare of children, strengthening of children's safety, protection of children from harmful environments and support for the sound rearing of children. Some of the measures included in the Plan are the development of a Children's Rights Index,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specialised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 disorders and autism and health examinations for preschoolers.

4. Newly Implemented Programmes and Projects and Their Scope

a. System of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against Youth

According to Article 20 of the Act on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ose who commit the following crimes may be disclosed: those involved in paid sex with youth, or the owner of an enterprise in the youth sex trade; those involved in producing, importing, or exporting child pornography; those involved in the sale of youth or sexual abuse of youth. The selection of offenders subject to the system depends on the penalty, type of crime, age of the victim, nature of the crime and the offender's criminal record related to youth sex.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disclosed is the name, age and

243

date of birth, occupation, detailed address, and summary of the offence. A decision on whose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is made through a process comprising the two steps of screening and the collection of the opinions of the individuals concerned. So fa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1,283 offenders has been disclosed on three occasions.

b. Enhancement of Protection of Maternity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maternity and the child, maternity leave was expanded from 60 days to 90 days in 2001 (Article 72 of the Labour Standards Act). Temporary Leave Benefits for Childcare, which the Government pays to workers during the period of temporary leave for childcare, was also introduced in 2001. The amount of the benefit is 200,000 won per month, but it is expected to be increased to 300,000 wo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

c. Expansion of free and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The project of expansion of free middle school education to urban areas is being implemented. By 2004, all middle school students will be benefit from free education. The budget for the expansion of free middle school education is as follows:

(unit: billion won)

Year	2002	2003	2004
Beneficiaries	First-year students	First and Second-year students	All Middle School Students
Budget ¹⁶	267.8	545.0	946.4

¹⁶ For entrance fee, tuition and the cost of textbooks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2차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

- * 2003년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정부보고서 2차 보고서 심사회의 기록.
- * 유엔사무국의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둔 것임. 구어체 그대로를 살려서 번역하여 문맥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음.
- * 회의 진행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돌아가며 한차례 질문을 하면, 정부대표단이 관련성 있는 질문을 모아서 대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짐.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대표단이 동문서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이를 고려하여 녹취록을 이해하기 바람. (▶-고덕체)는 위원들의 발언을 (◀-신명조체)는 한국정부대표단의 발언을 뜻함. 위원들의 성명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고, 질문자나 질문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줄을 바꿨음.
- * 2차보고서와 관련된 문건은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www.sarangbang.or.kr)에서 볼 수 있음. 1차 보고서와 관련된 문건은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1997, 내일을 여는 책)으로 출판돼 있음.
- * 정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 대표단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2차 보고서를 토론, 검토할 것이다. 위원들이 각자 소개를 할 것이고, 한국 대사의 인사말이 있겠다.

위원 자기 소개: 생략

◀ 대사(정의영) 인사말: 한국이 인권부분에서도 작년 월드컵과 같은 성취가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어 대표단 소개: 문경태(보건복지부), 이연수-제네바 대표부, 안소영-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허강일-제네바 대표부, 이성기-제네바 대표부, 민만기-법무부 인권과, 이경아-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김학기-보건복지부 가족복지과, 최병갑-교육부, 정상원-문화관광부 청소년지원과, 이중호, 노동부, 황의수-청소년보호위원회, 박교선-교육부, 서문희-보건사회연구원, 강유구-보건사회연구원)

대표단은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지난 5년 간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인권은 대단한 발전을 해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1차 보고서 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가이드에 주의를 기울였다.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인권의 보편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

◀ 대표단 기초발제: (문경태 보건복지부 실장)
의장과 위원 여러분, 아동권리위원회 심사에 한국의 2차보고서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다. 이 보고서는 협약 44조에 의거하여 2000년 5월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관계 정부 부처와 기구들의 수많은 논의에 따른 합의된 논의의 결과물이다.

이 기회를 빌어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헌신해온 많은 민간단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들의 조력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으며, 법적·제도적 변화를 자극했으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했을 영역들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건설적인 비판을 해왔다.

2차 보고서의 구조:

의장님,

2차 보고서와 서면답변은 협약의 구체적 조항과 1996년 1차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에 부응하여 한국이 취한 법적·제도적 노력의 상세한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기초발제에서는 한국의 최근 경제·사회적 조건을 설명하고 싶다. 정책과 입법 노력은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와 우리의 토론에 담긴 조치와 행동들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1차 보고서 제출 이후 한국에서 아동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노력들을 핵심적인 입법적·제도적 조치들과 행동에 방점을 두고 간략히 소개하겠다.

경제·사회적 조건:

의장님,

알다시피, 한국은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처럼 1997년의 재정적 위기로 타격을 입었다. 사실상, 그것은 한국의 재정과 기업부문의 특성이 왜버린 수십년 간의 재정적 부정과 부패의 결과였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국가경제를 구조조정하고 민주적 가치와 시장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대담한 개혁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이들 개혁은 구제금융의 일환으로서 IMF의 지침에 따라 행해졌다.

기업, 재정, 공적부문과 노동부문에서 이들 개혁프로그램의 이행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위축의 결과로 이미 늘어난 실업 인구에 이들이 더해졌다. 갑작스런 실업은 가족해체를 낳았고 취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수가 늘어났다.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예를 들어, 아동을 포함하여 개혁프로그램에 의해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최대한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규정이 확대되었다.

한국은 분단 국가이다. 두 개의 한국은 1950년대 초기에 서로 전쟁을 했고 지난 반세기를

불신과 적의 속에서 살아왔다.

한반도의 상황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노력의 결과로 2000년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정상회담 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 활동이 이어졌다.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의 지속으로 영구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을 때만이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강고한 안보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따라서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위비 지출은 계속될 것이다.

의장님,

한국은 지난 12월에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새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새롭게 세워진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을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에 기초하여 미래의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그의 일생의 노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 노무현은 예전에 인권변호사였으며, 아동권 증진에 있어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아동권리협약의 목적 성취에 훨씬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가 성,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비정규노동자, 학벌에 따른 차별에 맞서고 중식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공언하였기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의 목적은 분명히 표명되었다.

법적·제도적 조치:

지난 5년 동안에, 아동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수많은 법적·제도적 조치가 수행돼왔다.

서면답변에서 설명되었듯이, 아동복지법이 2000년에 전면적으로 손질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비차별 원칙, 생명권, 생존과 발전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에 둔 것은 협약의 일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를 아동복지법에 도입한 것은 또다른 중요한 진전이다.

1997년에, 정부는 1998년 7월에 발효된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했다. 이 법은 가해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가정 폭력이 아동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제정되어 2000년 2월에 발효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19세 미만의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착취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 증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주의 인권을 다룰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 설립 이래로, 위원회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증진할 목적으로 정부 내에 focal point로서 2000년에 여성부가 설립되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가 여성부의 직무에 속한다.

2002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세워진, 아동보호와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은 아동보호와 육성을 위한 5개 분야 48개 조치로 구성돼 있다. 이 5개 분야는 아동권의 강화, 아동의 보건복지의 증진, 아동안전의 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이다.

시민권:

1차 보고서 제출 이후, 이름과 국적에 대한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에 부응하여 국적법과 함께 민법이 개정되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아동의 신분등록과 성에 관련하여 199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어, "아버지가 외국인인 아동은 어머니의 성을 취하고 어머니의 호적에 등록된다"는 새로운 절이 포함되었다.

한국정부는 1997년 12월 국적법 조항을 개정하여 부계와 모계 둘다를 채택했다. 한국인 아버지 또는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1997년 12월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만들어졌다.

가족 환경과 대안 양육:

지난 국가적 재정 위기 동안에, 직장상실과 그에 이어진 가족해체로 인해 가족환경을 상실한 아동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취약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했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생계비 보조 수혜자의 수를 늘린 것이었다. 그중 25%가 아동이었다. 동시에 식사제공서비스가 학교와 복지기관의 영양부족 아동에게 정부에 의해 전달되었다. 1992년 정부에 의해 시작된 학교급식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었고 2001년에는 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

가족을 상실한 아동을 위한 조치로서, 주거시설에서의 보호가 제공되었다. 시장, 도지사, 구청장은 이들 아동보호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사할 책임이 있다. 추가로 2000년부터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에 따라 인적자원, 재정, 운영, 프로그램 등 거의 모든 측면이 매 3년마다 평가된다.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와 민간단체는 양육비 제공과 수양부모 훈련을 통해 위탁양

육을 장려하고 있다. 위탁가정보호가 아직은 드물지만,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는 매우 노력하고 있다. 2003년부터 16개의 위탁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될 것이다. 추가로 친척위탁보호가 상당히 증진되었다.

복지시설의 형태를 소규모로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시험적인 그룹홈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2001년 현재 32개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다.

기초 보건과 복지:

아동보건의 우선목적은 무상의 출생전후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사망율, 질병률, 장애를 줄이는 것이다. 보건관리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관련된다. 이전에는 저소득가정만 이용가능했으나, 신진대사(metabolism)에 관한 검진이 1997년부터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확대되었다.

모성과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또한 정부가 육아를 위한 휴식기간동안에 노동자에게 지급을 하는 육아휴직수당이 2001년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약물 남용으로 해를 입은 청소년을 지원하고 치료와 재활을 위해 국립 및 공립 병원을 이용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복지·고용 및 특수교육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복지 계획이 1996년 대통령 산하 장애인 복지 위원회에 의해 착수되었다. 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은 2002년에 끝났다. 2차 5개년 계획은 2003년에 시작된다. 2003년부터 무상 조기 아동보호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가 2001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1개의 전국 센터와 17개의 지방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위한 24시간 전화 운영이 이들 센터들의 주요 책임 중 하나이다. 이들 센터는 보고된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방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

지난 몇 년간 교육당국은 교육환경 개선과 취약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구적 지식에 기반한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인간 자원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학급 당 학생의 수를 2002년부터 35명으로 줄였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02개의 학교와 12,304개 교실을 짓기 위해 12조3천6백억원이 투자될 것이다.

이 계획에서 더 나아가, 2002년 7차 교육개혁이 시작됐다. 7차 교육개혁은 최적의 교육의 양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의 범위와 수준이 또한 재조

정될 것이다.

무상중등교육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까지 모든 중학교학생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유아기의 동등한 교육기회의 기초를 제공할 목적으로 저소득가정에 속하는 5세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호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또한 여성의 경제사회적 진전을 지원하는데 북무할 것이다.

특별보호조치:

한국정부는 또한 청소년 노동자와 기타의 취약 아동을 그들의 복지와 권리 영역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9년 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을 비준한데 이어 정부는 1997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최소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높였다. 이 조치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의무교육연령과 노동최소연령간의 불일치를 해결했다.

정부는 또한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주선하거나 아동포르노를 매매, 제작하는 등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의 가해자들은 처벌된다. 추가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결론:

의장님,

한국정부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인척하고 있다. 우리는 이 회의가 건설적인 조언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길 희망한다.

위원회가 제기할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최선에서 기꺼이 대답할 것이다. 감사한다.

▶ 알다시피 이 자리는 대결(confrontation)이 아니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정부가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2개의 선택의정서에 사인한 것을 알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비준하길 바란다.

보고서가 한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담고 있지 않다. 1997년 후의 위기가 미친 영향, 아동에게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가 투입됐는지에 대해 언급되어야 한다.

유엔의 여타 위원회의 우려에 따르면 차별문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있다. 지난 2-3년간 변화되어 왔지만 좀더 언급이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됐다. 국가인권위의 구조, 독립성, 권한, 국가인권위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효과적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것만이(only general)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대해 일하고 있는가?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할 기관이 전혀 없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 효과적인 작업을 할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아동헌장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무슨 중요한 변화가 있었나?

한국정부가 협약에 대해 유보한 조항에 대해 1차 보고서 심사 후(1996년에 있었음) 특별히 권고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고려되지 않았다. 귀국의 보고서는 여전히 철회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한국에서 협약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협약의 배포를 위해, 전국적인, 무슨 조치가 있었나? 그런 구조적 노력, 협약에서 선언된 기준과 일치하는 입법, 나는 한국이 취한 행동과 조치에 대해 알고 싶다.

협약에 부합되지 않고 모순되는 법을 가능한 한 없애기 위해, 국내법을 재고하는 것, 예-이런 행동중의 하나가 아동의 고용최소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조정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긍정적인 행동이다.

한국에서의 협약의 가치와 지위에 관해, 그리고 여타의 국제조약에 대해, 항상 법원에서 그것들이 원용되어야 하고, 국내법과 같은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얘기하는 모든 바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협약과 부분적으로 일치되거나 상이한 규범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있어 이런 점이 고려되는지 의심스럽다. 위원회가 한국의 1차 보고서에 대해 검토하고 권고가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한 주목이 없었고, 적어도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

주요한 권고중의 하나는 남아와 여아의 혼인가능최소연령의 차이였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귀국은 입양절차를 재고하려하겠다고 했었다. 입양과 대리양육이 재고되어야만 하고 개선되어야만 한다. 같은 선상에서,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에 대한 제한에 대해 추가정보를 달라.

아동의 사망 원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살을 포함하여 1-9세 나이에 '사고(accident)'로 인한 사망이 문제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사고란 다양한 사고, 집이나 도로, 도처에서의 사고를 의미한다.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귀국에서 많은 학생회가 조직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 학생회가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정한 자유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전혀 권한이 없고, 사실상 참여가 부족하다. 교칙에 따르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이것은 토론되어야 할 문제이다.

장애아동에 관해, 특히 장애여아를 포함하여 많은 장애아동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차별받고 있고, 이들에 대해 진정한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체벌과 관련, 체벌은 도입되었다 금지되었다 제도입되었다 금지되는 등 바뀌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여전히 체벌은 학교에서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적어도 법적으로도 금지돼있지 않다. 위원회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체벌은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의 1차 권고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묻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최신 정보이다.

아동의 정의가 법마다 다르다. 혼란스럽다. 청소년(youth)과 아동(children)의 차이가 뭐냐? 문화관광부의 많은 부서가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데 (youth planning, education, training, so on) 25세 이하의 youth가 아동을 포함하느냐? 청소년헌장에는 아동이 빠져있는데 18세 미만 아동의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 많은 정부부처가 아동을 다루는데, 공통의 문제를 포착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있느냐? 귀국의 보고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언급했었는데 그것이 이번 2차 보고서에서는 사라졌다. 또 '아동의 보호·증진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언급했고, 2002년에 만들어진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언급했는데 그게 조정기구냐? 누가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알고 싶고, 언급했던 기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다.

또한 귀국의 보고서 준비에는 여러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학계가 관련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기구는 단지 보고서를 위해서만 만든거냐? 일종의 특별 위원회나,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상설기구냐 아니냐?

또 한국은 '1998-2002'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을 언급했는데, 보고서에서는 '아동보호와 양육을 위한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rearing)'을 언급했다. 이 종합계획이 국가행동계획을 대체하는 것이냐? 한국은 이미 2002년에 끝난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하에서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언급했다. 그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좋은 점은 무엇이었으며, 한국은 여전히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했느냐? 누가 국가행동계획을 결정하고 디자인했으며 누가 어떻게 조직했느냐? 귀국은 작년에 뉴욕에서 회의를 가진 'the World Fit for Children'을 고려했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에게서 몇 건의 진정을 받았는지 통계가 없다.

아동인권을 모니터하기 위한 지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아동이 국가인권위에 어떻게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아동권리협약의 배포, 특히 학교환경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게 최고의 방법인데)을 포함하여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정부2차보고서 작성에 민간단체가 참여했느냐?

아동의 무력분쟁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언제 비준할 것이냐? 자발적 징병 가능 최소 연령은? 18세 전에 징병이 가능한가? 만약 그렇다면 18세 이전 징병을 방지하기 위해 무슨 노력이 있었느냐?

혼인 연령이 여아 16세, 남아 18세로 남녀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갔느냐?

체벌이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지 않다. 체벌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캠페인이 있느냐? 대안적인 훈육방법을 얻기 위해 또는 아동에게 해롭거나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한 훈육방법을 얻기 위한 정보캠페인이 있느냐?

국방비 예산이 아동에게 돌아갈 예산,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를 투여할 것을 감소시키고 있다.

여아의 권리에 대해 문화적으로 조약에 반하는 문제가 있느냐?

인터넷의 사용은 문제시되는 측면과 아동에게 그것을 다루는 권한을 부여하는 양면이 있다. 협약의 배포와 연계하여 밀접하게 연관된다.

국제협력프로그램이 얼마나 협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느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에 대한 소위원회 설치가 가능한가?

한국이 아동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장래에 투자할 수 있느냐? 한국의 경제지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좋다. 아동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시스템, 세금, 구조조정 중인 것 안다. 협약 4조(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가 적용돼야 한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전략,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 전략이 있느냐?

위원회는 시민사회,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심이 있다. 사적부문이 정부와 비교하여 얼마나 큰가? 사적부문, 민간단체와 정부간에 어떤 계약이 있느냐? 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유보조항에 관해, 한국의 문화와 전통, 맥락을 이해하고 싶다. 왜 귀국은 유보조항을 철회할 수 없느냐? '입양'에 관해 '문화'라고 했다. 그들이 비밀과 사생활을 원한다고 했다. 모든 나라에서 입양부모들은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부모를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을 보호할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느냐? 아동이 입양과정을 통해 착취받지 않도록, 입양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비밀입양이 아동의 이익이 아니라 과정을 위한 구실이 된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서 무엇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나는 알고싶다. 국가가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동과 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입양부모들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길이 없다. 정부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이건 대중의 일반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보호의 문제라고 말해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혼한 부모에 대한 아동의 면접권에 대해(유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이 조항은 협약의 혁신적인 조항이고 부모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 문제다. 이건 다시 정부 리더쉽의 문제다. 전통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문제이다. 다른 문제, 체벌과도 연관된다. 정부는 어른이나 고사의견과 싸워야 한다. 학교에서의 규율에 대해, 사실상 아동은 이런 태도에 종속되었다.

국가인권위에 대해, 주요 문제는 진정의 숫자만이 아니라 무엇이 주요한 진정이나는 거다. 아동이 두려움 없이, 앞서 말한 가부장제적인 전통에 종속되지 않고, 국가인권위로 향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거냐? 아동이 참여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는 접근성(accessability)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다가가야 할(approach) 문제이기도 하다. 짧고 쉽게 말해서, 아동이 고사나 부모와 관련된 문제를 진정하는데 있어 마음 편안할 수 있도록 아동의 심리상태를 변화시키는 문제이다. 정부는 아동의 진정을 득려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통계와 관련, 정부의 서면답변에서 관련된 문제들인데, 왜 상이한 법률하에 상이한 연령집단이 있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냐?

민간단체의 지표들, 아동권리학회와 청소년개발원이 수행한 지표들이 있는데, 정부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이것들을 고려하고 민간단체들과 함께 작업할 계획이 있느냐?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들이 끝난 지점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려하느냐?

정부는 5년마다 보고서를 내게 되었는데, 일반통계에 기초해서 보고서에 담길 통계나 지표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느냐? 한국의 일반통계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다루기도 하고, 입법의 변화나 통계의 성별 배경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일반통계에 추가하여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통계를 수행할 것으로 예견하느냐? 그래서 나는 정부의 통계 지표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꿀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분명히 알고 싶다.

공무원, 국회의원 등과 관련하여, 그들이 협약에 대해 알기 위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특히 국회의원들이) 협약을 이용하는 법을 알기 위해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우리 나라의 예를 소개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메뉴얼이 있다. 입법이 협약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만 하는지, 아동을 위한 입법의 원칙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메뉴얼이다.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협약에 부응하여 공무를 수행, 특히 매우 중요한 일인 입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귀 정부가 그런 메뉴얼이나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40조에 관한 질문이다. 왜 정부보고서 193항에서 항소·상소권을 언급하면서 군사법정에서는 단심제만이 허락된다고 했다. 그런데 소년사법에서 항소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 조항을 유보했느냐?

예산관련 질문이다. 서면답변에서 일반예산이 2002년에 105 조원인데 교육예산은 19.5x이고, 그 다음에 보건예산을 보여주는데 단위를 백만원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내 계산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계산을 잘 못하지만, 아동보건예산이 국가예산에서 0.0 원 미만이 된다. 가족복지프로그램은 8억이 넘는데 이건 1x미만이 되고, 아동보호예산은 2억8천만원인데, 이건 0.2x 미만이다. 이것 역시 너무 낮다. 이건 부모가 보건비를 스스로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동보건예산에 지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모든 가정이 보건비에 지출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아동권에 대한 구체적 책임은 없다. 아동에 대한 소위원회도 없다. 장애아동 유치원 입학거부에 관한 진정접수가 있었다. 의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읍저버로 참석한 박경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발언을 듣고 싶다.

◀ 박경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국가인권위는 최근에 설립됐다. 1년밖에 안됐다. 1년 2개월 동안 3천건이 넘는 진정접수를 받았는데 오직 1건이 아동(장애아동 유치원 입학관련)이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아동 진정이 있기를 희망한다. 아동권리에 관해 최근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2권의 교재를 발간했다. 인권을 향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우선순위이다. 위원회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있어 아동권의 다양한 사안들의 진정한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 아동권에 대한 사회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일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아동보호와 양육을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가 어떤 제안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정부로부터 제안을 받았느냐?

3천건이 넘는 진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원께서는 그렇게 많은 진정을 다루기에 적절한 자원과 예산을 갖고 있다고 느끼느냐? 아동이 국가인권위에 대해 알고 아동이 진정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은?

국가인권위 위원중에 적어도 한사람은 아동권 전문가인가? 위원 임명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 중에 아동권 전문가가 있다고 보느냐?

◀ 박경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국가인권위 위원 구성은 4명은 대통령, 2명은 여당, 2명은 야당, 3명은 대법원이 추천하며 합해서 11명이다. 불행하게도 11명중에 아동권 전문가로 역할 할 수 있는 위원은 없다. 3년 후, 다음 구성 때는 이점이 수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많은 진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1년 간 설립단계에서 절차 문제, 직권선발문제로 많이 지체되었다. 250여 직원이 있고 국가인권위가 잘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침해조사소위, 차별소위, 정책소위, 3개의 위원회가 있다.

아동권은 자동적으로 차별소위로 간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매우 가부장제적이고 매우 유교적이다. 이점이 한국에서 아동권을 강화하는데 장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체 영역에서 인식의 향상, 인권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의 작년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방임된 아동이었고, 두 번째는 방임된 노인이었다. 한국의 정부기관이 이행해야 할 아동권에 관련된 권고를 3월말에 출판할 것이다.

◀ 정부 대표단: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상설적인 기구가 아니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다. 2차 보고서에 기술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도 그렇다. 우리 대표단과 나는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보고서에 기술된 아동권리조정위원회를 마찬가지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민간단체와 조정 노력을 하기 위한 기구로 이해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약의 평가에 관하여 상설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할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조정과 모니터링, 또는 둘다나?

◀ 둘다이다.

▶ 똑같은 위원회로서나?

◀ 나는 말했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이것은 1차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였다. 1996년에 위원회가 심사했을 때 토론됐었다. 우리는 이번 심사를 계기로 상설적 기구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특별위원회였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아동권리조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뭐냐? 어느 것이 조정 활동을 하는 것이며 그 설립된 것인지 관련있는 것이 설립된 것인지 알고 싶다.

◀ 난, 이미 답변했다. 모니터링하고 협약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위원회가 한국에는 없다. 그래서 이 심사 후에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보의 배포에 관해 답변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대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정부보고서를 게재하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른 부처와 민간단체들과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원들이 제기한 국회에서 국제조약에 대한 매뉴얼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며 주목하겠다.

유보조항에 대해 주의 깊게 철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과의 갈등을 무시하면서 철회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정부는 사회여론이 철회에 우호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일하겠다. 아동이 이혼한 부모와 면접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국내법이 없다. 후에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법적 기제를 먼저 만든 후

에 철회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다. 단심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직 군사법원에 적용, 비상사태시에만 적용된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동권리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군사법원의 예외적 상황을 언급했는데, 당신들이 전혀 별도의 법적 조치를 안 취해도 되는데 왜 철회할 수 없느냐? 유보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

아동의 부모면접권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1차 권고 후에 하지못한 이유가 뭐며,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언제 할 수 있는 것이냐?

◀ 아동의 면접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나,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단심제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5개월 미만, 혼외출생아동, 입양부모들은 입양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고, 자기 혈통의 아이로 등록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입양을 부진케하는 요인,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문화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입양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해외 입양 모두 규제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22개의 입양기관이 관장한다. 해외입양은 입양기관(정부의 허가를 받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지도자들은 이런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즈음, 과거에는 비밀입양을 선호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공개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에 관해서는 한국은 민간단체와 개인시민이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는 공적 기제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전문가의 의견은 모든 정책입안과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된다. 또한 정부행정부처의 기관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모든 자문위원회의 20%의 구성원이 민간단체 출신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정책과 여타의 현안관련 도전에 직면할 때 광범위한 민간단체와 전문이 집단의 권고를 받아 협의하고 있다.

체벌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18조와 시행령 31조에 따라 학교장은 체벌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체벌지침을 내린바 없다. 학교에서 체벌을 할 때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참여에 의해 결정된 각 학교의 교칙에 의거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한다. 교칙은 학교마다 다르며, 체벌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칙은 언제 어떤 방식의 체벌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교칙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다.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조합, 민간단체,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수집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직은 어떤 합의도 없다.

▶ 최근 교육부는 2002년 3월,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 또 (6월에 발표

한)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서도 체벌을 허용했다. 이것도 2002년이다. 한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려는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 이것은 체벌을 금지하려는 어떤 행동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체벌이 금지됐다가 또 해제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싶다. 나는 협의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 교사와 논의했다고 하는데 아동과는 논의했느냐? 체벌의 영향, 체벌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지식, 체벌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고려했느냐, 정부가 한 대답은 서면답변에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체벌금지와 체벌에 대한 논의에서 그리고 태도 변화를 위한 과정에서 이용했느냐?

▶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체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 다른 문화, 다른 나라의 선례에서 한국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대안적인 교육, 아동에게 해롭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사나 교장의 재량과 의견에 체벌을 맡겨두는 건 안된다. 교사나 학교마다 생각과 재량이 다른데 다른 재량에 따라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법 밖에 있게 되고 학대받게 된다. 체벌금지는 태도의 변화, 가정에서의 변화 없이 학교의 체벌 변화를 생각할 수 없다. 가정에서도 (체벌금지가) 중요하다.

◀ 체벌에 관해, 국가인권위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반대했다. 아동의 마음에 분노와 우울과 학교생활에 대한 반감을 자아낸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18조를 개정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 그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따르라.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 한국의 자료수집 시스템은 지금까지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에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 아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법이 협약의 아동 정의(즉, 18세 미만)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수집의 불충분성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왔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할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지표는 5년마다 아동권 이행의 진전사항을 평가할 것이고 따라서 아동권에 대한 자료수집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동권리지표를 이용한 평가의 결과는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백서 형태로 발간될 것이다.

아동관련 정부 예산에 관련하여, 아동보건·복지 예산에 할당된 예산이 복지비로 축소되었고 정부예산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면답변에서 보여진 지출은 의료보험비와 예방접종 관련 지출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

부처마다 아동의 연령규정이 차이 나는 것은 18세 미만인 협약의 정의에 따라 고려될 것이다.

위원께서 제기했던 재정위기에서 복지 체계는 수정되고 갱신되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 개념을 개발했다. 생산적 복지는 4년 동안 개발된 새로운 개념이고 이 개념은 3가지를 구성요소로 한다. 첫째는 빈곤선 아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헌법의 보장에 의해 정부에 보조금이나 지원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생산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미국에서 과거에 AFDC라고 불렀던 일종의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시간 제한적인 지원 서비스를 채택했다. 세 번째는 빈민복지에 할당된 예산은 국가 경제에 매우 건설적일 뿐 아니라 생산적이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가 김대중 정부 하에 개발된 원칙이며 한국의 복지체계의 원칙이자 초석이다.

▶ 그 답변은 서면답변의 반복이다. 나의 구체적 질문은 민간단체가 개발한 지표를 이용했는지, 상이한 자료수집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칠 필요는 없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답이 없어서 유감이다.

◀ 글썽요. 자료수집체계에 대해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한다. 이 보고서(서면답변)에서 몇가지 실수한 점을 확인하고 싶다. 사실, 서면답변 2쪽 중간에 있는 보건복지예산에서, 누가 이게 너무 적다고 했지요? 실제로, 이것은 아동보건에 할당된 전체 지출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우리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의료 보험을 발전시켰고, 그 액수가 반영된다면 예산은 많이 증가될 것이고, 또 예방 접종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오역을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고, 이후에 다른 통계를 제출해서 오류를 수정하겠다.

▶ 의료보험체계가 보험비 지불에 기초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돈을 내느냐? 의료보험이 어떻게 전체 인구를 포괄하느냐?

◀ 그렇다. 4천8백만 인구 전체가 의료보험이나 빈민을 위한 의료보호에 의해 포괄된다. 4천6백만 인구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수혜자는 자신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정부는 많은 돈을 의료보험에 보조한다.

▶ 의료보험체계에 대해,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이 포괄되는지를 알고 싶다. 아동이 특별한 적용범위가 되느냐?

◀ 장애를 가진 아동 그리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 희귀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아동의 결사의 자유, 특히 학생의 정치적 활동의 금지에 대해 알고 싶다.

특히, 한국의 경향, 아동(홀로 되거나, 이혼, 경제상태가 안 좋거나 등)을 시설에 두는 경향은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보인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 원칙(general principle of family)과 모순된다. 가부장적 태도는 가족 내의 성원인 인간(어머니를 포함해)에 대해 깊은 차별이다. 또한 가족에게 주요한 책임을 떠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모의 권리가 아동의 권리에 우세하고,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자연적인 가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